

#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조화방안

2021. 6

정형록·정광화·노희천·기은선·김미옥·허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조화방안

2021. 6

정형록·정광화·노희천·기은선·김미옥·허성준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외부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며,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현황 파악에 제약이 있으며,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회계기준 적용방식, 구분회계의 복잡성, 수입원천 차이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재무정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변환하면 임의성이 개입될 가능성, 재무정보 이용자 범위의 불명확성, 의료기관의 특수성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조화방안을 장·단기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단기적 관점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의료법인을 제외한 논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장점과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장기적 관점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모든 공익법인의 기본 회계기준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하위 회계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단기 조화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개정기관과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개정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중립적 기관의 참여를 통해 의료법인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적시적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I. 서론 .....	1
II.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주요 현황 및 쟁점사항 .....	4
1.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현황 .....	4
가. 의료기관의 분류 .....	4
나. 의료기관의 과세체계 .....	6
다. 의료기관의 재무보고기준 .....	8
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제정배경 및 연혁 .....	11
2.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14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14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	25
3.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공시와 활용 .....	28
가.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공시의무 .....	28
나.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활용 .....	38
4.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의 쟁점사항 .....	41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및 회계정보 공시대상 의료기관의 제한성 .....	41
나. 의료기관 결산서류에 대한 회계감사 및 사후감리체계 미비 .....	45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비교가능성 저하 .....	48
라. 의료기관 회계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49
5. 해외사례 .....	51
가. 미국 .....	51
나. 일본 .....	57
다. 정책적 시사점 .....	74

---

---

### III.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차이 분석 및 쟁점사항 .. 77

1.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개요 .....	77
가. 도입배경 및 제정과정 .....	77
나. 공익법인 회계기준 체계 .....	78
다. 적용대상 .....	78
라. 공시하는 결산서류 .....	78
마. 공익법인 재무보고 .....	79
2.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 회계처리 .....	82
가. 사업수익 .....	82
나. 사업비용 .....	82
3. 공익법인의 세금 .....	84
4.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및 이행의무 .....	85
5.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	89
가. 공통점 .....	89
나. 차이점 .....	90
6.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문제점 .....	94
가. 비교 가능성 저하 .....	94
나. 의료법인 재무정보 공시 변환을 통한 유용성 검토 .....	96

### IV.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단계적 조화방안 ..... 99

1. 선행연구 .....	99
2.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조화 가능성 분석 .....	101
가. 의료법인의 특수성 및 사업영역별 공익성 검토 .....	101
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05
3.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단계적 조화방안 .....	105
가. 회계기준 조화방안 .....	105

---

---

나. 공시 조화방안 .....	106
4.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방안 .....	123
<b>V. 결론 .....</b>	<b>125</b>
1. 현황 .....	125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	125
나. 공익법인 회계기준 .....	126
2. 문제점 .....	127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자체의 문제점 .....	127
나. 공익법인 회계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	129
3. 종합 및 제언 .....	133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단기적 조화방안 .....	133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방안 .....	134
<b>참고문헌 .....</b>	<b>136</b>

---

〈표 II-1〉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구분 .....	4
〈표 II-2〉 설립근거법에 따른 의료기관 구분 .....	5
〈표 II-3〉 적용세법에 따른 의료기관 구분 .....	7
〈표 II-4〉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의무 .....	9
〈표 II-5〉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재무보고기준 .....	11
〈표 II-6〉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제정 및 연혁 .....	14
〈표 II-7〉 병원의 재무제표 .....	15
〈표 II-8〉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구분 .....	19
〈표 II-9〉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구분 .....	22
〈표 II-10〉 자본의 표시방법 비교 .....	26
〈표 II-1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비교 .....	27
〈표 II-12〉 의료기관 공시 재무상태표 예시(서울대학교병원) .....	31
〈표 II-13〉 의료기관 공시 손익계산서 예시(서울대학교병원) .....	35
〈표 II-14〉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가 수집 패널기관 현황 .....	39
〈표 II-15〉 의료원가 배분대상 금액의 결정 .....	40
〈표 II-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원가계산 프로세스 .....	40
〈표 II-17〉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현황 .....	42
〈표 II-18〉 2018~2019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현황 .....	43
〈표 II-19〉 의료기관과 공익법인의 공시항목 비교 .....	44
〈표 II-20〉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실태 .....	44
〈표 II-21〉 의료기관의 외부회계감사의무 관련 법령 .....	46
〈표 II-22〉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49
〈표 II-23〉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의 재검토기한 개정 연혁 .....	50
〈표 II-24〉 미국의 소유형태별 의료기관 수 .....	52
〈표 II-25〉 일본의 의료법인 유형 .....	58
〈표 II-26〉 일본의 종류별 의료법인의 수 .....	59
〈표 II-27〉 일본의 의료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법인 .....	61

---

〈표 II-28〉 일본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양식 .....	65
〈표 II-29〉 일본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양식 .....	67
〈표 II-30〉 일본의 의료법인의 종류별 순자산 계정과목 .....	69
〈표 II-31〉 일본의 의료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간편회계처리 .....	70
〈표 II-32〉 일본의 의료법인의 업무범위 .....	71
〈표 II-33〉 일본의 의료법인의 업무범위 .....	72
〈표 III-1〉 공익법인 회계기준 주요 내용 .....	80
〈표 III-2〉 공익법인 회계기준 필수적 주식 기재사항 .....	81
〈표 III-3〉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차이점 .....	93
〈표 III-4〉 전체 사업 대비 수입금액 비율 .....	96
〈표 IV-1〉 엄기중(2019)의 조화방안 .....	100
〈표 IV-2〉 공익법인 회계기준 운영성과표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계정 연계(1안) .....	110
〈표 IV-3〉 공익법인 회계기준 운영성과표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계정 연계(2안) .....	114
〈표 IV-4〉 공익법인 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계정 연계(안) .....	119

---

## 그림목차

---

[그림 II-1] 공시대상 의료기관(2019년) .....	29
[그림 II-2] 의료기관 공시시스템 메뉴체계도 .....	30
[그림 II-3]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 조회화면 .....	30
[그림 II-4] 미국 의료기관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53

---

# I. 서론

---

-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2017년 12월 최초 제정·고시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2018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외부회계감사와 결산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관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기부자, 주무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아닌 각 법령에서 정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도록 허용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회계정보 공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적용(2021.3.5. 이후)되어 의료기관 전반에 관한 경영현황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존재함
    - 이는 2018년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이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여 의료기관 간 회계정보를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개인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가중시킴
    - 추가로 공시항목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불과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 의료기관이 제출·공시하는 결산서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적십자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병원 등은 설립근거법에 따라 결산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하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이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제출·공시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문제점이 지적됨
  -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쉽지 않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규모에 따라 의료기관의 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이 왜곡 표시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규모에 손금산입한도가 존재하지만, 결산서에 반영하는 수준을 의료기관이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기되는 주장임
- 의료기관 회계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 수준이므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재검토기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의 적절한 개정이 수행되기 어려움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한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제기되는 회계 쟁점에 대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통합하여 대응하자는 논의가 제기됨

-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이 주주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회계처리에 공통점이 존재함
  -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할 수 없고, 이익은 시설관리, 연구개발 및 공익목적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
- 하지만 설립방식의 차이, 영리속성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간에 차이점도 있음
  - 의료법인은 설립주체가 의료인으로 제한되고 영리적인 속성도 있는 의료사업에 기초하는 반면, 공익법인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비영리적 속성에 기초하여 설립됨
  - 의료법인은 교환거래에 기초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성과계산이 중요하지만, 공익법인은 비교환거래에 기초하므로 기부의사를 관리하는 사항이 회계적으로 중요함
- 이로 인해 의료법인·학교법인의 재무 정보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 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또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국세청 공시를 위해 의료법인·학교법인의 경우 재무 정보를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 및 재무 정보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함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법인의 회계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Ⅱ.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주요 현황 및 쟁점사항

### 1.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현황

#### 가. 의료기관의 분류

-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됨<sup>1)</sup>

〈표 II-1〉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구분

구분	정의	종류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출처: 「의료법」 제3조 제2항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으로 제한됨<sup>2)</sup>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의료법」 제3조 제2항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설립근거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11-2〉 설립근거법에 따른 의료기관 구분

설립주체		근거법	해당 의료기관	관련 부처
의료인		의료법	개인 병·의원	보건복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치료감호소	법무부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 의무사령부 산하 병원	국방부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병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조례 지역보건법	전국의 시립병원 및 도립병원 전국의 보건소 및 보건원	각 시도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의료법	각종 의료법인병원	
민법	사단법인	민법	각종 사단법인병원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민법	각종 재단법인병원	
특별법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각종 사립대학 부속병원	교육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각종 사회복지법인병원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각종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각종 국립대학교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암관리법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적십자병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교육부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산재병원 외	고용노동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중앙보훈병원 외	국가보훈처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국 각지의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출처: 박두진, 『병원회계와 세무실무』(2018), p.18

- 의료기관은 개인이 설립한 병·의원과 법인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됨
  - 의료법인의 재산은 궁극적으로 국고에 귀속됨

#### 나. 의료기관의 과세체계

-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소득세법」을, 법인병원은 「법인세법」을 적용받음
  - 법인병원은 법인세 비과세대상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은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단, 지방의료원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병원은 다시 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병원과 ② 50%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병원으로 구분됨<sup>3)</sup>

---

3)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표 II-3〉 적용세법에 따른 의료기관 구분

구분	적용세법	과세방법		
개인 병·의원	소득세법			
법인병원	법인세법	비과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대상	국공립병원 (시·도립병원, 국립경찰병원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설정대상	학교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그 외 법인병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법인병원이 의료업에서 얻은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리추구 여부와 무관하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의료업에서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 수익이나 영리추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음
  - 단, 법인병원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또는 50% 손금산입함으로써 과세이연이 가능함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임
  -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증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임

- 그러나 비영리공익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음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함<sup>4)</sup>

#### 다. 의료기관의 재무보고기준

-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임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 또는 회계처리 내용에 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sup>5)</sup>
  - 의료기관 회계규칙이 최초로 입법될 당시 존재하던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근거로 계정과목의 일부 내용과 회계처리내용을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함
- 2021.3.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됨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5)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표 II-4〉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의무

구분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미만	×
	100병상 이상	○

출처: 「의료법」 제62조 제2항

- 다만, 의료법 이외에 의료기관의 설립근거법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재무보고기준을 정한 경우가 있음
  - 준정부기관,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준정부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준수해야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조 제5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함
  - 준정부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중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하며, 그 외 의료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 적용됨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가 적용되나, 이것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2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중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하며, 그 외 의료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sup>6)</sup>
- 요약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립근거법령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적용 회계기준에 차이가 있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 미적용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1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법적 근거 미비로 적용회계기준이 상이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 미적용기관은 기업회계기준 중심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2항

〈표 II-5〉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재무보고기준

구분		재무보고기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급 의료기관</li> <li>• 조산원</li> <li>• 1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li> </ul>	준정부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회계기준 적용)
	사립학교가 설립한 의료기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타 의료기관	법적으로 적용이 의무화된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출처: 저자 작성

- 한편 세법은 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sup>7)</sup>
  - 이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란 실무상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 해석되고 있음<sup>8)</sup>
    - 병원회계와 법인세/소득세회계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점

## 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제정 배경 및 연혁

- 대한병원협회는 1981.4. 「병원회계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함
  - 대한병원협회가 작성한 병원회계준칙의 적용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임

7)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여야 함.

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년 제1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2018.3.

- 병원회계준칙의 제정으로 이전까지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오던 대부분 병원이 병원회계준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
- 1989.7.1.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통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료기관 회계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
  - 통일적인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불비로 국민들이 병원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의료수가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함
- 1990.2. 보건사회부훈령 제590호로 「병원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동 지침에 의거 1990.11. 대한병원협회가 작성한 「병원회계준칙」이 승인됨
  - 「병원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동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병원회계준칙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1990.11. 보건사회부장관이 대한병원협회가 작성한 병원회계준칙을 승인함
  - 동 준칙은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됨
- 1998.10. 자체 규제개혁의 일환(법적근거 미비)으로 병원회계준칙의 근거가 되었던 병원회계처리지침이 폐지되고, 그에 따른 결산보고의무도 함께 폐지됨
  - 병원회계준칙의 폐지로 의료기관은 「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 폐지된 「병원회계지침」,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등 다양한 재무보고기준을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
    - 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은 전국대학병원 경리부서장협의회가 2000.2.29.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임

- 1999.10. 의약분업 실행 시 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의료계와 병원협회,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가 통일적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마련 및 준수에 합의함
  -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통일적 회계기준의 마련·준수와 함께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등이 거론됨
- 이후 2002.3.30.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제49조의 2(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소규모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제한함
- 2003.9.15. 「의료법」 제49조의 2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제정됨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의료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로 그 시행일은 다음과 같음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4.1.1.
    -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2005.1.1.
    -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2006.1.1.
  -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바<sup>9)</sup>, 결과적으로 2006년부터 모든 종합병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함
- 2003.12.19.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세 부작성방법이 제정·고시됨

---

9)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제1호

- 2020.3.4. 「의료법」 개정으로 2021. 3.5.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 대상이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됨
-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표 II-6〉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제정 및 연혁

일자	내용	적용대상
1981.4.~1990.2.	대한병원협회 병원회계준칙 자율 운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990.2.	병원회계처리지침 제정(보건사회부훈령 제590호)	
1990.11.	병원회계준칙 승인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998.10.	병원회계처리지침 폐지	
1999.10.	의료계와 통일적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마련·준수에 합의	
2002.3.30.	의료법 제49조의 2(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정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2003.9.15.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정	
2003.12.19.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제정·고시	
2004.1.1.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5.1.1.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6.1.1.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21.3.5.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100병상 이상 병원

출처: 저자 작성

## 2.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목적)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sup>10)</sup>

10)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함<sup>11)</sup>
- **(구분경리)**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구분해야 하며, 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해야 함<sup>12)</sup>
- **(재무제표)** 병원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개인병원 제외), 현금흐름표로 구성됨<sup>13)</sup>
  -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표 II-7〉 병원의 재무제표

법인병원	개인병원	비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별지 제1호 서식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본금변동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같음 가능)

출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 제7조~제10조

- **(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1.1.~12.31.(정부의 회계연도)임<sup>14)</sup>
  - 다만, 사립학교가 개설한 병원의 회계연도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름
- **(계정과목 표시)** 병원의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함<sup>15)</sup>

1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이 2021. 3.5.부터 1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아직 의료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되지 않음.

1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3조

13)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 제7조~제10조

14)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5조

15)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6조

-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sup>16)</sup>,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기본급 변동계산서(개인병원 제외), 현금흐름표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법인은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 <http://haspa.khidi.or.kr>)에 공시해야 함

## 2)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을 훈령으로 고시하고 있음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의 본문은 일반적 작성기준, 세부 작성기준, 결산, 재무제표의 주요 부속명세서, 재검토기한의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 가) 일반적 작성기준

- **(의료기관회계의 일반원칙)**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회계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음<sup>17)</sup>
  - (신뢰성의 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명료성의 원칙)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

16) 의료미수금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 차입금명세서,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입원(외래)수익명세서, 직종별 인건비명세서,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입원(외래)환자명세서 10종

17)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1.1.

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함

- (충분성의 원칙)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함
  - (계속성의 원칙)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됨
  - (중요성의 원칙)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보수주의 원칙) 회계처리 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실질중의 원칙)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원칙)**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음<sup>18)</sup>
-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기와 주석으로 함
  - (기업회계 관행의 존중) 재무제표는 이 고시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작성하되 이 고시 및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함
  - (재무제표의 형식)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주기 및 주석 표시)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함

---

18)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1.2.

## 나)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의료기관 재무상태표의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음<sup>19)</sup>
  - (구분표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함
  - (총액표시)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세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됨
  - (유동·비유동 구분)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동성 배열법)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 (미결산항목 기재금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기재하여야 함
-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구분)**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과목 구분은 다음과 같음<sup>20)</sup>
  - 의료미수금은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함. 입원환자 재원기간 중 발생한 미수금은 재원미수금, 퇴원환자로 부터 발생한 미수금은 퇴원미수금, 외래환자로부터 발생한 미수금은 외래미수금, 기타의료수익의 미수금은 기타의료수익미수금으로 구분 함. 의료미수금은 보험자단체 등의 청구미수금과 환자본인부담금미수액을 포함함. 재원미수금 등은 환자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미수금, 의료급여미수금, 자동차보험미수금, 산재보험미수금, 일반환자미수금 및 건강검진미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수금은 의료미수금을 제외한 미수채권 등을 말함

19)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1.가.

20)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1.나.

- 유형자산은 과목별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유형자산의 인식시점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함
- 개인병원은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되므로 자본의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음

〈표 11-8〉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구분

구분		계정과목	
자산	유동 자산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국고보조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의료미수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제세, 본지점, 이연법인세자산, 기타의 당좌 자산
		재고자산	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저장품, 의료부대물품
		기타유동자산	
	비유동 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퇴직보험예치금, 보증금, 기타투자자산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기타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기타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제세,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예수보증금, 단기부채성충당금, 임직원단기차입금, 이연법인세부채, 기타의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금융리스미지급금, 장기성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금, 이연법인세부채 및 임대보증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본	기본금	법인기본금, 기타기본금	
	자본잉여금	자본보존목적의 기타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평가잉여금,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이익잉여금(결손금)	차기이월잉여금(결손금), 당기순이익(순손실)	

출처: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11.1.나.

#### 다)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의료기관 손익계산서의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음<sup>21)</sup>
  - (발생주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함
  -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 (수익비용 대응)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함
  - (총액주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됨
  - (구분 표시) 손익계산서는 의료이익(의료손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법인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 당기순이익(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및 당기순이익(순손실)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함
-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구분)**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의 계정과목 구분은 다음과 같음<sup>22)</sup>
  - 의료수익은 의료수익감면을 차감한 후의 수익을 계상함. 이 경우 의료수익감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의료수익감면은 진료비에누리, 진료비할인, 연구용환자감면 및 자선환자감면 등으로 구분함
  - 의료부대수익은 주차장직영수익, 매점직영수익, 일반식당직영수익, 영안실직영수익 및 기타 시설직영수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경우 의료부대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21)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2.가.

22)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2.나~라.

- 임대료수익은 임대한 병원시설에 따라 영안실임대수익 및 매점임대수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수익은 연구가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함
-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및 퇴직급여로 구분함
- 재료비는 약품비, 진료재료비 및 급식재료비로 구분하며 약품, 진료재료 등의 매입조건이나 대금지불조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대금의 감액은 매입에누리(또는 매입할인)로 분류하고, 약품 등의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함
- 관리운영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기수도료, 세금과공과, 보험료, 환경관리비, 지급입차료, 지급수수료, 수선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접대비, 행사비, 연료비, 선교비, 의료사회사업비, 소모품비, 자체연구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임차자산개량상각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피복침구비, 외주용역비, 잡비 및 의료분쟁비용 등으로 구분함. 의료분쟁비용은 의료사고 보상금, 의료사고 처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 의료부대비용은 주차장직영비용, 매점직영비용, 일반식당직영비용, 영안실직영비용 및 기타 시설직영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경우 의료부대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 학교법인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법인에 진출한 이익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함.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 연구비용은 연구가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함
- 학교법인,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기 위해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처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의료비용 및 의료외비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함.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부 사용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부담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법인세비용을 산출함. 다만, 학교법인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이외의 병원은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

〈표 II-9〉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구분

구분		계정과목
수익	의료수익	입원수익, 외래수익 및 기타의료수익
	의료외수익	의료부대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연구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기부금수익, 잡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및 보험차익 등
비용	의료비용	인건비,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
	의료외비용	의료부대비용,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부금,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연구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감모손, 고유목적사업비, 잡손실 및 재해손실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	

출처: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2.나~라.

### 라) 자산·부채의 평가

-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함<sup>23)</sup>
-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는 동법 제

23)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3.가.

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음

-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국민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단체에 의하여 지불되는 환자에 대하여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단체의 심사가 완료되어 수납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 처리함<sup>24)</sup>
  - 이 경우 의료수익 삭감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삭감된 진료비 중 보험자단체에 이의 신청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수납될 경우에는 수납된 시점에 의료수익이 수납액만큼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함
    - 따라서 이의신청 시는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장부에 비망으로 기록함
- **(국고보조금의 처리방법)** 국고보조금은 교부목적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짐<sup>25)</sup>
  - 국립대학교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이 적자보전이나 운영비보조 등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면<sup>26)</sup> 의료외수익 중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함
  - 시설투자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함

24)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3.나.

25)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3.다.

26)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진료하여 적자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수가와의 수가차액을 보조해주는 경우, 공공병원이 차관 등의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비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

마) 기본금변동계산서 작성기준

- 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 이익잉여금처분액 및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함<sup>27)</sup>

바) 현금흐름표 작성기준

-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 및 기말의 현금으로 구분함<sup>28)</sup>

사) 주식 작성기준<sup>29)</sup>

- 주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과 상호 연결시켜 표시함
- 주식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표시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3조에 따른 회계 구분 내역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 정보

아)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sup>30)</sup>

-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의료미수금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27)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4

28)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5

29)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I.6

30)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IV

- 재고자산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 유형자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차입금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외래(입원)수익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 직종별 인건비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입원환자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외래환자 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자) 재검토기한<sup>31)</sup>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감독기관의 정보 수요 목적에서 탄생함<sup>32)</sup>
  - 그 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등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별화된 의료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음
  - 또한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계정과목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감독 목적에 맞추어 주요 부속명세서의 서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31)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V

3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조

### 1)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표시방법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자본을 기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함
- 이러한 자본 표시방법의 차이는 법인병원의 경우 출자지분을 발행하지 않는 데서 기인함

〈표 II-10〉 자본의 표시방법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법인병원	개인병원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1. 기본금 2. 자본잉여금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이익잉여금(결손금)	별도의 구분 없음

출처: 저자 작성

### 2)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 제조기업이나 상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가 의료기관 손익계산서에는 의료비용에 포함됨
-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수익(매출액에 대응)에서 의료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을 차감하여 의료이익(영업이익에 대응)을 계산하며, 관리운영비가 의료비용에 포함됨

〈표 II-11〉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I. 매출액	I. 의료수익
II. 매출원가	II. 의료비용
III. 매출총이익	(1) 인건비
IV. 판매비와관리비	(2) 재료비
V. 영업이익	(3) 관리운영비
	III. 의료이익

출처: 저자 작성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표시

-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구분하여 표시함
-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상 부채와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기관이 회계연도 말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 4)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공공병원이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면 의료외수익 중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함<sup>33)</sup>
  - 시설투자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수익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으면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나,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

33)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해야 함<sup>34)</sup>

○ 자산관련 보조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함<sup>35)</sup>

### 5) 법인세회계

□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부담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함<sup>36)</sup>

□ 그러나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학교법인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이외의 병원은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없이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sup>37)</sup>

## 3.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공시와 활용

### 가.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공시의무

□ (법적 근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은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함

○ 의료기관 재무제표의 공시를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8.2.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https://haspa.khidi.or.kr/>)을 개설함

□ (공시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대상은 「의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중 법인병원임

34)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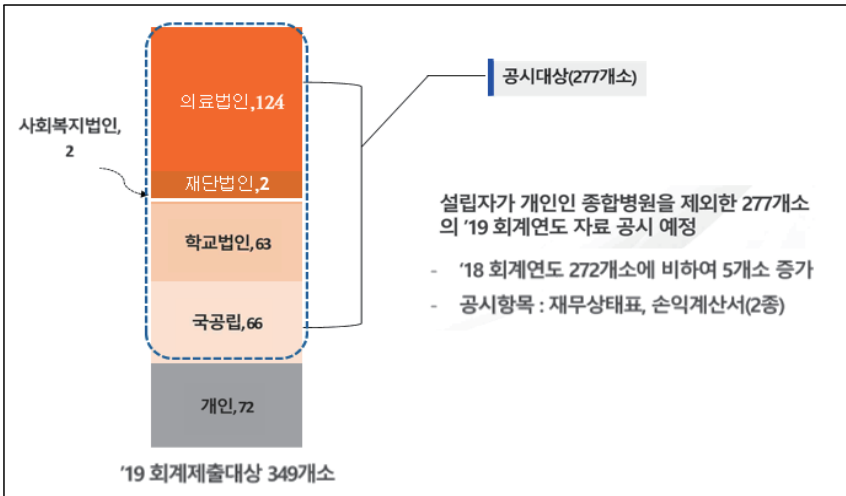
35)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17.5.

36)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37)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중 설립자가 개인인 의료기관, 휴·폐업·파산 의료기관 등은 제외됨
- 현재는 법인형태 종합병원이 공시대상이나, 「의료법」 개정으로 2021.3.5. 이후에는 100병상 이상 법인병원으로 공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1] 공시대상 의료기관(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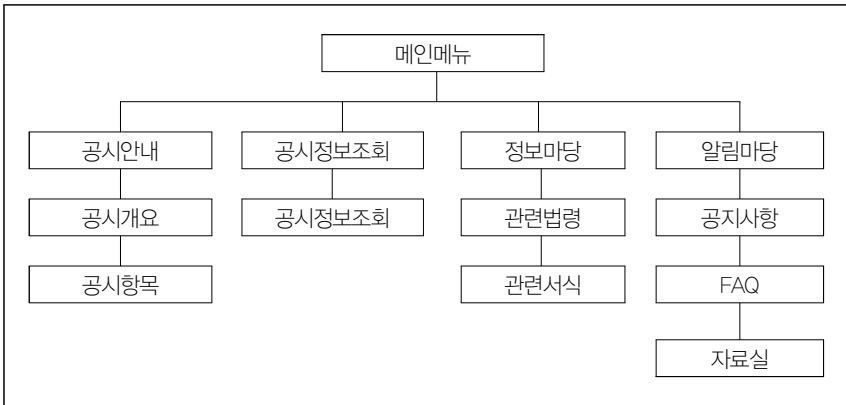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 (공시시스템 개요) 의료기관 공시시스템은 공시안내, 공시정보조회, 정보마당, 알림마당 등 4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 (공시안내) 공시개요, 공시대상, 공시항목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서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함
  - (공시정보조회) 기관명, 병상 수,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필터링하여 재무제표를 조회한 후 Excel 및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재무제표 이외에도 의료기관 일반현황(병상수, 시도, 종별, 설립형태) 정보를 제공함
    - 의료기관 일반현황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함

- (정보마당) 회계자료 제출 및 공시의 근거법령과 규칙,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과목분류 및 내용 해석을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함
- (알림마당) 공지사항, FAQ, 자료실로 구성됨

[그림 11-2] 의료기관 공시시스템 메뉴체계도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그림 11-3]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 조회화면

순번	연도	기관명	병상수	시도	종별	설립형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	2018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342	인천	종합병원	의료법인	Q	Q
2	2018	(의)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236	경기	종합병원	의료법인	Q	Q
3	2018	(재)미래내천주성삼성성직수도회천주성...	285	대구	종합병원	재단법인	Q	Q
4	2018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746	부산	상급종합병원	학교법인	Q	Q
5	2018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586	인천	종합병원	학교법인	Q	Q
6	2018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898	경기	종합병원	학교법인	Q	Q
7	2018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438	서울	종합병원	학교법인	Q	Q
8	2018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644	경기	종합병원	학교법인	Q	Q
9	2018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300	서울	종합병원	학교법인	Q	Q

출처: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https://haspa.khidi.or.kr/>)

- (공시대상 자료) 공시대상 자료는 2016년 결산서부터이며, 공시항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임
- 다음 표는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재무제표임

〈표 II-12〉 의료기관 공시 재무상태표 예시(서울대학교병원)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재무상태표

제 (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전)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I. 유동자산	425,481,874,202	384,017,992,111
1. 당좌자산	416,288,384,524	375,577,601,201
현금및현금성자산	123,084,663,539	102,279,868,876
(국고보조금)		
단기금융상품	67,953,810,580	81,887,391,678
단기매매증권		
의료미수금	130,541,157,983	112,537,145,424
(의료미수금대손충당금)	-3,042,694,083	-3,045,496,893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미수금	96,172,156,249	80,037,264,592
(미수금대손충당금)	-2,803,375,317	-2,597,045,395
미수수익	935,535,794	1,289,944,026
선급금		
선급비용	991,492,676	690,081,915
선급제세	291,744,215	297,106,017
본지점	2,163,892,888	2,201,340,961
이연법인세자산		
기타당좌자산		

〈표 II-12〉의 계속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2.재고자산	9,193,489,678	8,440,390,910
약품	3,637,921,042	3,937,329,411
진료재료	5,327,330,444	4,309,524,257
급식재료	44,129,569	47,497,649
저장품	184,108,623	146,039,593
의료부대물품		
기타재고자산		
3.기타유동자산		
II.비유동자산	1,088,212,844,728	1,015,207,029,569
1.투자자산	14,602,255,391	12,311,064,459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4,666,087,407	1,572,784,981
장기대여금	1,276,519,112	1,276,849,042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보증금	5,823,511,152	6,427,637,716
이연법인세자산		
기타투자자산	2,836,137,720	3,033,792,720
2.유형자산	1,052,906,409,668	978,456,782,969
토지	564,316,325,460	564,316,325,460
(국고보조금)		
건물	563,452,724,959	442,686,353,989
(국고보조금)	-210,048,649	-220,504,75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81,343,935,277	-167,269,591,366
건축물	3,483,642,566	3,483,642,566
(국고보조금)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2,942,456,179	-2,866,729,081
기계장치	47,782,132,722	33,125,594,268
(국고보조금)	-8,961,36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8,254,866,930	-25,503,690,316
의료장비	343,024,285,795	326,889,953,727
(국고보조금)	-113,291,525	-90,859,839
(의료장비감가상각누계액)	-276,365,864,999	-249,143,650,495

〈표 11-12〉의 계속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차량운반구	1,605,826,282	1,605,826,282
(국고보조금)	-143,158,338	-185,058,338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321,815,323	-1,222,894,398
공기구비품	72,191,679,656	69,853,713,120
(국고보조금)	-116,727,281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59,547,316,400	-55,819,035,931
기타유형자산	8,326,150,328	15,659,043,800
(국고보조금)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5,930,357,555	-13,502,982,465
건설중인자산	5,022,441,721	36,789,403,937
(국고보조금)		-128,077,200
3.무형자산	20,704,179,669	24,439,182,141
영업권		
산업재산권	131,710,896	103,893,526
기타무형자산	20,572,468,773	24,335,288,615
4.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1,513,694,718,930	1,399,225,021,680
I.유동부채	257,999,270,470	248,080,735,833
매입채무	77,562,724,754	76,195,506,507
단기차입금	20,000,000,000	20,000,000,000
미지급금	9,402,822,754	3,996,859,357
선수금	8,373,271,209	679,775,219
예수금	10,258,824,596	8,355,640,855
미지급비용	43,369,950,515	51,241,167,922
미지급제세	355,387,205	437,104,854
유동성장기부채	5,999,469,705	1,320,634,104
(현재가치할인차금)		
선수수익	76,419,664,256	70,619,034,407
예수보증금		1,270,000
단기부채성총당금	4,581,505,473	12,726,954,393
임직원단기차입금		
이연법인세부채		
기타유동부채	1,675,650,003	2,506,788,215

〈표 II-12〉의 계속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II.비유동부채	467,620,665,807	378,548,956,047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금융리스미지급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성미지급금	113,451,928,467	
(현재가치할인차금)	-31,527,717,636	
퇴직급여충당금	370,546,860,256	358,495,248,197
(국민연금퇴직전환금)	-341,855,420	-354,003,420
(퇴직보험예차금)	-58,051,436,320	-52,365,833,190
이연법인세부채		
임대보증금	3,919,839,500	3,941,667,750
기타비유동부채	69,623,046,960	68,831,876,710
III.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8,712,161,060	132,158,671,127
IV.의료발전준비금	72,242,537,965	72,294,655,130
부채총계	936,574,635,302	831,083,018,137
I.기본금	415,111,124,577	405,923,124,577
법인기본금	20,771,578,370	20,771,578,370
기타기본금	394,339,546,207	385,151,546,207
II.자본잉여금	-44,408,435,756	-44,408,435,756
자산재평가적립금		
기타자본잉여금	-44,408,435,756	-44,408,435,756
III.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6,272,342,394	495,748,071,082
재평가잉여금	493,260,571,082	493,260,571,082
해외사업환산손익	3,011,771,312	2,487,500,000
IV.이익잉여금(결손금)	-289,854,947,587	-289,120,756,360
전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289,120,756,360	-288,612,351,363
회계변경의누적효과 <sup>1</sup>		
당기순이익(순손실)	-734,191,227	-508,404,997
자본총계	577,120,083,628	568,142,003,543
부채와자본총계	1,513,694,718,930	1,399,225,021,680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별지 제1호서식]

〈표 II-13〉 의료기관 공시 손익계산서 예시(서울대학교병원)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손익계산서

제 (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I. 의료수익	1,034,913,409,074	994,875,606,253
1. 입원수익	571,543,002,376	545,523,527,110
2. 외래수익	400,395,213,043	388,474,843,479
3. 기타의료수익	62,975,193,655	60,877,235,664
건강진단수익	56,931,421,289	55,904,184,492
수탁검사수익	2,274,368,778	2,341,307,105
직원급식수익		
제증명료수익	2,722,907,120	2,378,608,640
구급차운영수익	2,690,300	4,226,800
기타수익	1,043,806,168	248,908,627
II. 의료비용	1,049,029,947,651	1,006,908,399,730
1. 인건비	471,615,169,931	453,088,390,100
급여	205,042,522,451	197,577,686,595
제수당	135,110,101,862	126,116,936,106
퇴직급여	49,577,745,005	49,114,598,789
기타인건비	81,884,800,613	80,279,168,610
2. 재료비	351,332,629,444	332,414,264,109
약품비	189,563,855,316	179,040,316,500
진료재료비	158,004,155,819	149,573,850,920
급식재료비	3,764,618,309	3,800,096,689
저장품비		
기타재료비		
3. 관리운영비	225,734,738,106	221,117,903,421
복리후생비	35,497,301,079	34,825,826,310
여비교통비	1,228,870,139	721,698,050
통신비	1,670,275,685	1,543,717,993

〈표 II-13〉의 계속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전기수도료	8,858,946,132	8,267,630,739
세금과공과	6,572,942,216	9,861,166,317
보험료	51,778,601	45,674,176
환경관리비	4,081,724,335	3,152,519,606
지급임차료	10,384,461,329	10,385,845,873
지급수수료	11,335,626,394	11,084,866,271
수선비	6,064,929,819	6,267,249,933
차량유지비	91,225,675	92,007,085
교육훈련비	8,157,305,077	7,224,810,652
도서인쇄비	824,038,055	795,089,240
접대비	116,095,608	140,387,369
행사비	671,325,254	390,242,049
연료비	4,704,782,167	4,221,771,306
선교비		
의료사회사업비	4,219,259,086	4,869,274,878
소모품비	2,396,304,270	2,134,129,635
자체연구비	8,014,270,228	7,393,247,246
감가상각비	46,754,830,243	47,506,968,901
무형자산상각비	5,670,016,001	6,076,538,155
임차자산개량상각비		
광고선전비	1,128,729,089	1,195,119,436
대손상각비	146,793,689	38,288,347
피복침구비	4,345,265,392	4,112,734,405
외주용역비	39,559,940,300	36,313,993,232
잡비	1,362,051,925	1,163,782,770
의료분쟁비용	864,905,750	1,157,862,585
기타관리비	10,960,744,568	10,135,460,862
4.기타의료비용	347,410,170	287,842,100
Ⅲ. 의료이익(손실)	-14,116,538,577	-12,032,793,477
Ⅳ. 의료외수익	161,611,549,414	158,484,528,185
1. 의료부대수익	15,540,377,232	13,626,665,303
장례식장수익	2,836,243,310	2,477,051,950

〈표 II-13〉의 계속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주차장수익	2,712,045,740	2,544,564,682
매점등수익		
기타의료부대수익	9,992,088,182	8,605,048,671
2.이자수익	3,617,635,752	3,366,148,924
3.배당금수익		
4.임대료수익	6,599,647,488	6,721,631,106
5.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6.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7.연구수익	105,451,851,521	98,551,180,136
연구중심병원연구수익		
수탁연구수익	86,792,012,362	83,295,473,444
임상시험수익	13,273,513,185	10,091,556,188
기타연구수익	5,386,325,974	5,164,150,504
8.외환차익	68,271,647	36,496,653
9.외화환산이익		
10.투자자산처분이익		
11.유형자산처분이익	281,181,370	468,981,305
12.대손충당금환입	629,478,053	239,100,450
13.기부금수익	11,840,714,126	18,636,348,768
14.잡이익	13,970,912,381	16,666,555,540
15.자산수증이익	28,347,334	171,420,000
16.채무면제이익		
17.보험차익		
18.기타의료외수익	3,583,132,510	
V. 의료외비용	140,638,292,796	127,653,647,432
1. 의료부대비용	9,504,301,376	7,032,543,454
장례식장비용	1,446,075,719	1,388,794,454
주차장비용	2,111,040,790	1,666,427,195
매점등비용		
기타의료부대비용	5,947,184,867	3,977,321,805
2. 이자비용	513,506,075	528,778,905
3. 기타대손상각비	206,329,922	260,638,204

〈표 II-13〉의 계속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4.기부금	9,971,787,550	9,735,899,540
5.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6.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7.연구비용	116,275,520,212	106,358,014,785
연구중심병원연구비용		
수탁연구비	87,404,459,945	71,228,041,957
임상시험비		
기타연구비	28,871,060,267	35,129,972,828
8.외환차손	16,451,952	346,689,708
9.외화환산손실	418,988	21,545,879
10.투자자산처분손실		
11.유형자산처분손실	1,051,801,961	28,042,228
12.고유목적사업비		
13.잡손실	409,866,576	2,055,189,357
14.재해손실		
15.기타의료외비용	2,688,308,184	1,286,305,372
Ⅵ.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6,856,718,041	18,798,087,276
Ⅶ.법인세비용(소득세)	1,089,536,500	1,059,388,953
Ⅷ.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당기순이익	5,767,181,541	17,738,698,323
Ⅸ.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3,500,000,000	23,300,000,000
X.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6,998,627,232	5,052,896,680
당기순이익(순손실)	-734,191,227	-508,404,997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별지 제2호서식]

#### 나.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활용<sup>38)</sup>

- 의료기관이 제공한 회계자료는 보건복지부,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의 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취합하고, 오

3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기관 원가계산의 이해』, 2020

류검증 및 분석을 거쳐 매년 의료기관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 의료기관 회계정보는 의료수가 결정, 정부보조금 지급, 과세자료 등 다양한 의료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9개 요양기관의 회계정보를 수집하여 의료원가를 계산한 후 이를 의료수가<sup>39)</sup>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2020년 공단의 원가수집 패널기관은 총 139개로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74.1%를 차지함

〈표 II-14〉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가 수집 패널기관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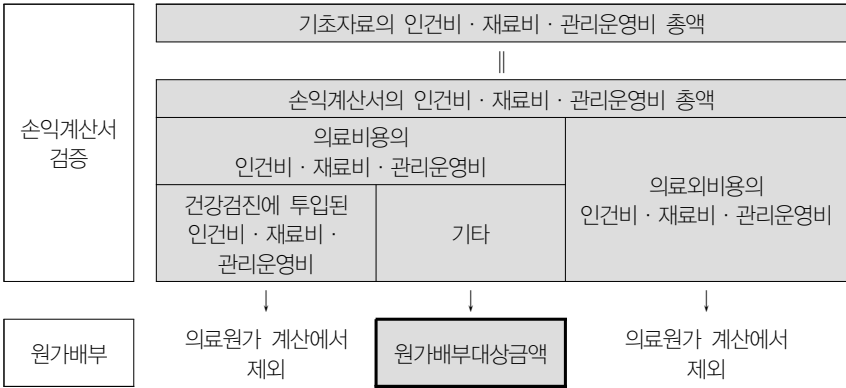
구분	총계	요양기관 종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2018년	91	2	54	16	19
2019년	107	4	69	15	19
2020년	139	4	99	18	18

출처: 저자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중 환자의 진료 및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항목만을 의료원가 계산에 포함함
- 의료외비용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등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의료원가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대상은 시행과, 진료행위, 환자인데, 원가배부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의료비용으로 구분 표시된 인건비·재료비·관리운영비 중 건강검진비용을 차감한 잔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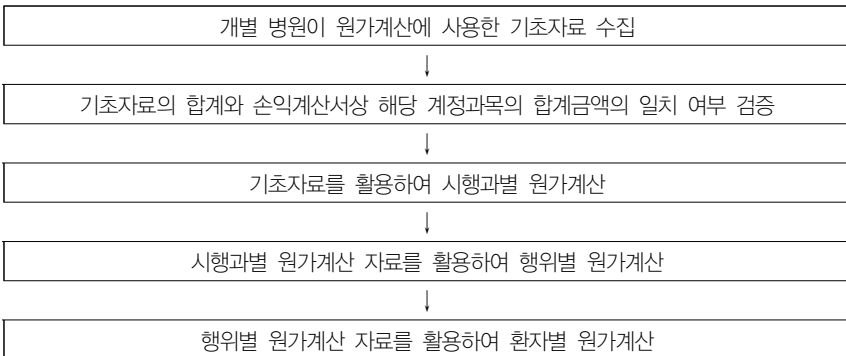
39) 정의: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

〈표 II-15〉 의료원가 배분대상 금액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결산서 및 원가계산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시행과별/행위별/환자별 원가계산을 시행함
  -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원가 계산에 사용할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한 기초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자료의 총액이 결산서상 해당 계정과목의 총액과 일치하는지를 합계를 검증함
  - 기초자료의 정확성이 검증되면 해당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시행과별 원가계산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별/환자별 원가를 집계함

〈표 II-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원가계산 프로세스



## 4.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의 쟁점사항

###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및 회계정보 공시대상 의료기관의 제한성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의료기관 전반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에 제약이 있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은 2004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5년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에는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됨
- 「의료법」 개정으로 2021.3.5.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임
- 2018년 말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922개<sup>40)</sup>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종합병원급 0.5%, 병원급 5.0%)에 불과함
  - 전체 의료기관의 95% 이상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료기관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

---

4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표 II-17〉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국립	공립	학교 법인	특수 법인	종교 법인	사회복지 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회사 법인	의료 법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개인	군병원
상급종합병원	42	-	12	26	-	-	1	-	1	-	2	-	-	-	-
종합병원	311	1	48	39	5	1	1	-	21	-	122	-	-	72	1
병원	1,465	8	26	10	1	-	17	3	25	-	312	2	-	1,042	19
요양병원	1,560	2	87	3	-	-	20	7	17	-	639	21	-	764	-
의원	31,718	65	13	16	7	2	37	114	70	98	147	99	14	31,032	4
치과병원	237	-	8	10	-	-	-	-	2	-	13	-	-	200	4
치과의원	17,668	12	3	5	4	-	1	22	8	12	21	24	15	17,539	2
조산원	21	-	-	-	-	-	-	-	-	-	-	-	-	21	-
보건의료원	15	-	15	-	-	-	-	-	-	-	-	-	-	-	-
보건소	241	-	241	-	-	-	-	-	-	-	-	-	-	-	-
보건지소	1,317	-	1,316	-	-	-	-	-	-	-	-	-	-	1	-
보건진료소	1,905	-	1,905	-	-	-	-	-	-	-	-	-	-	-	-
한방병원	307	-	2	20	-	-	-	-	21	-	33	2	-	229	-
한의원	14,295	3	6	8	-	1	8	5	18	4	30	34	13	14,156	9
소계	71,102	91	3,682	137	17	4	85	151	183	114	1,319	182	42	65,056	3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대상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중에서도 ‘법인병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욱 제한적임
  - 2018년 말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922개이며 이 중 개인병원이 2,307개를 차지하는바, 법인병원의 수는 1,615개(=3,922개-2,307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27%에 불과함
  - 1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인병원의 재무 정보는 외부에 공시되고 있지 않음

〈표 II-18〉 2018~2019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현황

(단위: 개소)

설립유형		2018년	2019년
법인	국, 공립	66	66
	학교법인	62	63
	종교법인	1	-
	사회복지법인	2	2
	재단법인	21	22
	의료법인	120	124
개인	개인	68	72
합계		340	349
종별구분		2018년	2019년
상급종합병원		42	42
종합병원		298	307
합계		340	349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2019년 제2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2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 아울러 공시항목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가지 항목에 불과하여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낮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가지 항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표 II-19〉 의료기관과 공익법인의 공시항목 비교

의료기관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표</li> <li>• 손익계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li> <li>•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li> <li>•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li> <li>•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보고서</li> <li>•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수정

-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의료기관의 67.3%가 모든 거래를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함
  -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81.6%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비율은 4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20〉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실태

(단위: %)

구분		모든거래 기준준수	일부거래 기준준수	미준수	무응답
전체		67.3	23.8	6.9	2.0
병상 규모별	100병상 미만	40.6	18.8	21.9	18.8
	100~200병상	53.2	31.9	10.6	4.3
	200~300병상	59.8	33.7	4.3	2.2
	300병상 이상	81.6	14.7	3.7	0.0
병원 종류별	상급종합병원	92.3	7.7	0.0	0.0
	종합병원	68.0	27.9	2.3	1.7
	병원	55.4	22.8	18.5	3.3
설립 형태별	국공립	72.2	5.6	16.7	5.6
	민간(법인)	69.3	23	6.1	1.6
	민간(개인)	53.7	36.6	7.3	2.4

주: 1. 299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표임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회계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3.12.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실무상의 적용한계(19%),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14.3%), 기타 회계기준 적용(9.5%)의 순서로 나타남

#### 나. 의료기관 결산서류에 대한 회계감사 및 사후감리체계 미비

- 의료기관이 제출·공시하는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제출·공시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정이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외부회계감사임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의 장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지만,<sup>41)</sup>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 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설립근거법에 의거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적십자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병원 등은 설립근거법에 의거, 결산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자산규모 및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회계감사의무가 있음

41) 「의료법」 제63조 제1항

〈표 II-21〉 의료기관의 외부회계감사사무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내용
사립학교법 제31조	<p>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p>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2조	<p>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p>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li> <li>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li> <li>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li> </ol>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p>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암관리법 제41조	<p>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	<p>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p>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재무상태표</li> <li>5. 수지계산서</li> <li>22. 감사보고서</li> </ol>

〈표 II-21〉의 계속

관련 법령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자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 그 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4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음<sup>42)</sup>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외부감사가 강제화되어 있지 않은 기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낮음
  - 종별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의원급 의료원가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 병·의원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음
  - 특히, 개인 병·의원의 경우 「외부감사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한 사후감리 부재 또한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비교가능성 저하

-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결산서에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규모에 따라 의료기관의 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이 왜곡되어 표시됨으로써 의료기관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정확한 병원경영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세무상 손금산입한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 또는 50%)는 존재하나, 결산서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는 개별 의료기관이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개별 의료기관이 결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규모에 의해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변동함으로써 정확한 병원경영성과의 파악이 어려움
  -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2016년 기준 종합병원은 100병상당 평균 38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의료이익의 109%,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78%에 해당하는 수준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순이익이

78%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초과하여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함

○ 병원규모가 클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병원의 경영성과가 왜곡되어 표시되는 정도가 증가함

〈표 II-22〉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단위: 백만원)

과목	전체평균	상급종합	300병상 이상	160~299병상	160병상 미만
의료이익	3,568,681	13,380,900	3,079,750	1,562,615	-60,63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992,576	18,313,249	4,949,289	1,692,052	775,74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3,886,134	19,443,132	3,176,176	371,001	473,85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경영분석』, 2016.

## 라. 의료기관 회계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제정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을 제정·고시하는 주무부처임

○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sup>43)</sup>

4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료기관정책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인에 대한 응차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시, 공인회계사와 대한병원협회 추천인, 시민단체 관계자, 경리담당자 등 각계 회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sup>44)</sup>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재검토기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경우 재검토기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은 매 3년마다 재검토가 요구됨
  - 2018.12.28. 개정 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1.1.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2조가 삭제되었으며,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대한 재검토기한은 없음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의 재검토기한은 2010.2.9. 처음 신설되었으며, 현재 3년마다 재검토가 요구됨

〈표 II-23〉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의 재검토기한 개정 연혁

구분	재검토기한
2010.2.9. 재검토기한 신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함
2015.12. 31. 개정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함
2016. 11. 1. 개정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저자 작성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0. 의료기관의 세탁물·급식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4) <https://dailymedi.com/detail.php?number=640148&thread=22r01>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의 경우 3년마다 주기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나, 재검토 수행체계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한 외부 확인에 어려움이 존재함
  - 2016.11.1. 개정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의 1차 재검토기한은 2019.12.31.까지이나, 2019.12.31. 이후 개정된 사항은 없음
    - 재검토가 진행되었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어 개정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움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을 포함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개정 시, 주무부처에 조언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부재함
    - 필요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있지만, 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 없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 자료에 Q&A가 포함되어 있지만, 회계 관련 단순 질의에 불과하고 응답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위탁 범위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접수 및 응답이 포함되는 것인지, Q&A의 답변을 보건복지부의 공식의견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함

## 5. 해외사례

### 가. 미국

- 미국의 의료기관은 크게 정부의료기관, 비영리조직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영리의료기관으로 구분됨<sup>45)</sup>
  - 정부의료기관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한 부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와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형태가 있음

45)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12. pp.14

- 비영리조직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조직운영자원을 기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는 자선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운영하는 2가지 형태가 있음
  - 영리의료기관은 개인의원에서 법인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상장법인도 있음
- 2018년 기준 미국의 의료기관 숫자는 총 5,534개로 이 중 영리병원이 18.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비영리 및 정부의료기관이 81.30%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24〉 미국의 소유형태별 의료기관 수

(단위: 개, %)

구분	개수	비중
커뮤니티 병원	4,840	87.46
비영리병원	2,849	51.48
영리병원	1,035	18.70
공공병원	956	17.28
국립병원	209	3.78
비영리 정신병원	397	7.17
기타	88	1.59
합계	5,534	100

주: 2018년 기준  
출처: 최만규·정학철·손만성, 『병원회계학』 제10판, 보문각, 2020,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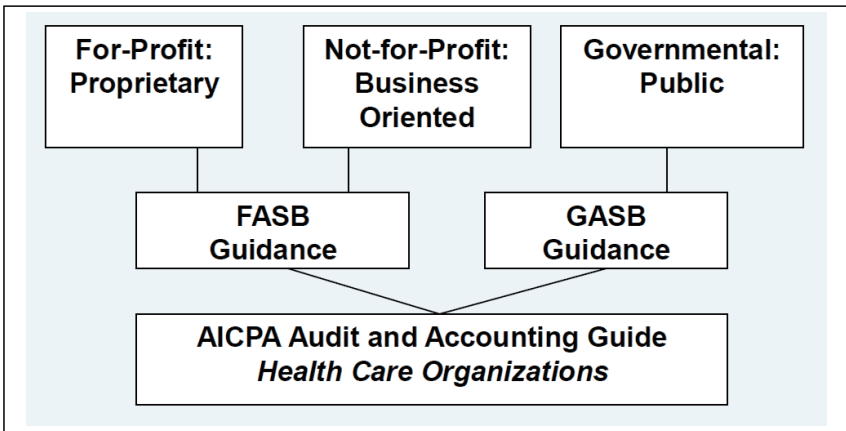
-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sup>46), 47)</sup>
- 의료기관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은 조직구조에 따라 다름
  - 영리 및 비영리의료기관은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이, 정부의료기관은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이 적용됨

46)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12., p.14

47)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 비영리(NPO) 의료기관은 “Accounting Standards Update (ASU) 2016-14, Not-for-Profit Entities (Topic 958):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of Not-for-Profit Entities”를 사용해야 함
- 모든 의료기관은 미국공인회계사회(the 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의 의료기관 감사 및 회계 지침(AICPA Audit and Accounting Guide, Health Care Organization)을 준수해야 하며, 적용순서는 FASB와 GASB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이 AICPA 감사 및 회계 지침임
  - AICAP 감사 및 회계 지침은 GASB, FASB 기준과 함께 의료기관의 GAAP을 구성함

[그림 11-4] 미국 의료기관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출처: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 의료기관은 내부목적으로 기금회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바, 내부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sup>48)</sup>
  - 일반기금(기부자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금)
  - 기부자 용도제한 기금

48)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 특정목적기금
- 설비교체 및 확장기금
- 기부금

- 의료기관의 조직구조에 따라 보고실체, 기부금, 재무제표 표시, 현금흐름, 예금 및 투자자산, 채무 재발행, 퇴직연금, 공정가치평가 등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음<sup>49)</sup>
- 의료기관의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또는 순자산보고서(statement of net assets),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순자산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가 있음<sup>50)</sup>
- 의료기관의 조직형태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보고되는 자본항목에 차이가 있음<sup>51)</sup>
  - 비영리의료기관 - 기부자 제한이 없는 순자산(net assets without donor restrictions), 기부자 제한이 있는 순자산(net assets with donor restrictions)
  - 정부의료기관 - 제약 없는 순자산, 제약 있는 순자산, 자본자산에의 투자
  - 영리의료기관 - 자본금 및 잉여금
- 비영리의료기관은 운영보고서에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영리의료기관과의 성과 비교를 위한 것임<sup>52)</sup>
  - 성과지표의 예로는 비용 대비 수익 초과, 비용 및 손실 대비 수익 및 차익 초과, 근로소득, 성과이익 등이 있음
  - 성과지표에는 투자이익, 유가증권의 실현 및 미실현차익은 포함되나, 소유주와의 거래, 제약 있는 기부금의 수취, 제약 있는 투자소득은

49)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50)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51)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52)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제외됨

- 의료기관의 수익 인식에 있어 특징은 다음과 같음<sup>53)</sup>
  - 환자서비스수익은 계약조정액(contractual adjustments; 청구액과 제3자 지불인이 지불하는 금액의 차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보고함
  - 지급이 예상되지 않는 빈곤 환자에 대한 자선서비스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되, 재무제표 메모로 보고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약정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선불건강보험계획(prepaid health care plans)은 서비스가 제공될 때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지불은 종종 제3자 지불인, 메디케어, 블루 크로스 또는 민간보험 회사에서 허용 비용 또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결정된 (예비)요율에 따라 이루어짐
  - 정부의료기관은 운영 및 비운영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비영리의료기관은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음
    - 서비스수익 등 지속적인 주요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 투자이익, 제약 없는 출연금 등 의료 제공에 부수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비영업이익
  - 비영리의료기관은 기준이 충족될 경우 기부된 서비스와 물품을 공정가치로 보고함
  - 비영리 및 정부의료기관은 기부된 비현금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함
- 의료기관의 비용 인식에 있어 특징은 다음과 같음<sup>54)</sup>
  -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함
  - 대손상각비의 경우 영리 및 비영리의료기관은 비용으로 기록하며, 정부의료기관은 총수익에서 차감함

53)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54)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 자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 비용은 성격별 분류(예. 급여 및 재료비) 또는 기능별 분류(환자 서비스 및 재정 및 관리비)에 의해 보고함
- 1983년 메디케어(병원서비스의 최대 구매자)는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이하 DRG)<sup>55)</sup>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예상 비용 지불시스템을 시작함<sup>56)</sup>
  - DRG에 대한 평균 지급액은 연방 수준에서 결정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치료 비용에 관계없이 제공자에게 지급됨
- 면세 의료기관은 세법 및 미 국세청(IRS)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내부자가 개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사용한 경우, 비영리기관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을 얻은 당사자와 기관의 관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중간제재(intermediate sanctions) 규정을 두고 있음
  - IRS는 의사채용 인센티브, 공동운영약정, 독립계약자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 여부, 비영리조직의 자산분배 등도 조사함
- 자선의료단체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AICPA 감사 및 회계지침에 따른 감사 및 공시의무가 있음<sup>57)</sup>

55)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56) [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https://www.mccc.edu/~horowitz/documents/Chap017_001.pdf)

5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12.

## 나. 일본<sup>58)</sup>

### 1) 의료법인의 유형

#### 가) 의료법인의 개념

- 「의료법」 제39조에 따른 의료법인이란 병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주하는 진료소 또는 요양노인보건의시설을 개설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함
  - 후생노동성의 의료시설 동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현재 일본의 병원 수는 8,440개, 진료소 숫자는 170,374개임
  - 이 중 개설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의료법인에 속하는 병원이 5,757개, 진료소는 55,062개로 병원의 약 70%, 진료소의 약 30%를 차지함
-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의료법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의료법인의 약 80% 이상이 1인 의사 의료법인으로 불리는 개인 개업의가 법인화한 것임
  - 소규모 의료법인은 일반의료법인보다 간소한 재무보고가 용인됨

#### 나) 의료법인제도의 설립

- 의료법인제도는 195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사업의 경영주체가 사업과 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의료업의 비영리성을 손상하지 않고, 법인격을 취득하여 자금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경영지속성과 연속성·안정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제도로 인정된 것임
  - 의료법인은 병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소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지만 그 이외에 적극적인 공익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이 점에서 「민법」상 공익법인과 구별됨

---

58)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jp/Documents/get-connected/pub/atc/201707/jp-atc-kaikeijyoho-201707-06.pdf>

- 또한 영리성에 관해서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함으로써 영리법인이 아니며, 이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구별됨

다) 의료법인의 종류

- 의료법인에는 사단의료법인과 재단의료법인이 있으며, 사단의료법인은 출자지분이 있는 의료법인과 출자지분이 없는 의료법인으로 구분됨
  - 2006년 6월 제5차 「의료법」 개정에 따라 사단의료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출자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은 인정되지 않음
    - 이는 의료법인의 공익성, 비영리성에 대한 의문의 불식과 지분 반환 등에 의해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되고 있음

〈표 II-25〉 일본의 의료법인 유형

분류	지분	종류
재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재단의료법인</li> <li>• 사회의료법인 · 특정의료법인</li> </ul>
사단	정함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출자지분이 없는 사단법인</li> <li>• 사회의료법인 · 특정의료법인</li> </ul>
	정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과조치형 의료법인(2007년 4월 이후에는 신규 설립할 수 없음)</li> <li>• 출자액 한도 법인</li> </ul>

출처: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jp/Documents/get-connected/pub/atc/201707/jp-atc-kaikeijyoho-201707-06.pdf>

- 출자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의 신규 설립은 불가능하지만, 2016년 3월 말 현재 전체의 약 18%가 출자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임
  - 기존의 출자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은 경과조치에 의하여 당분간 존속하며, 이들을 ‘경과조치형 의료법인’으로 부름
  - ‘출자액 한도법인’은 출자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에서 사원 퇴사 시 반환되는 금액에 상한을 두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 것임

- 출자지분이 없는 사단으로서 응급의료나 벽지의료 등 특히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법인이 도도부현<sup>59)</sup>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사회의료법인’이 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의료의 보급 및 향상, 사회복지에 대한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이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특정의료법인’이 될 수 있음
  - 사회의료법인이나 특정의료법인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높은 공익성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특별한 법인이며, 세제상 우대조치(의료이익에 대한 면세 또는 경감세율 적용)가 있음
    - 일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23.2%이나, 공익법인 등(일반사단법인 등 제외)은 19%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표 II-26〉 일본의 종류별 의료법인의 수

(단위: 개)

유형	재단	사단		계
		출자지분 있음	출자지분 없음	
일반의료법인	298	10,428	40,601	51,327
사회의료법인	34	228	-	262
특정의료법인	49	320	-	369
계	381	10,976	40,601	51,958

주: 2016년 3월말 기준

출처: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jp/Documents/get-connected/pub/atc/201707/jp-atc-kaikeijyoho-201707-06.pdf>

59)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퇴, 도쿄도), 도(道 도쿄, 홋카이도), 부(府 후, 오사카부와 교토부), 현(県 켄, 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

## 2) 의료법인의 회계

### 가) 종전의 회계

- 종전에는 「병원회계준칙」에 준거하여 회계처리를 행하여 옴
  - 요양노인보건시설은 「요양노인보건시설회계·경리준칙」, 방문간호스테이션 등은 「지정노인방문간호사업 및 지정방문간호사업의 회계·경리준칙」이 있음
- 「병원회계준칙」은 1965년 후생노동성이 제정한 것으로 병원경영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06년 「의료법」 개정 전까지 병원은 「병원회계준칙」, 요양노인보건시설은 「요양노인보건시설의 회계 및 경리준칙」이라고 하는 시설별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이를 기초로 도도부현에 재무제표의 신고를 실시하고 있었음
  - 2007년 이후에는 의료법인 전체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되었지만, 작성에 명확한 회계처리의 근거가 없고 부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음
- 「병원회계준칙」은 시설회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 작성 시 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병원회계준칙은 기준의 형태가 아니라 법인의 하위기관인 병원의 재무 정보 보고를 위한 보충정보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회계기준이 정비되어 있지만, 의료기관만 회계기준이 없는 상태였음
- 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에 「의료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고, 2017년부터 시행됨

## 나)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공표

- 최초의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4개 병원단체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함
  - 처음에는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적극적 활용이 재촉될 뿐이며,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적용할 것인지는 개별 의료법인의 선택사항이었음
  - 결과적으로 「병원회계준칙」을 적용하는 법인과 4개 병원단체협의회 의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법인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결산서가 작성되므로 의료법인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았음
- 2016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4개 병원단체협의회 의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한 후생노동성령에 의한 「의료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적용이 의무화됨
  - 일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20일 후생노동성 통지, 「의료법인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에 정의되어 있으며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27〉 일본의 의료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법인

- ① 최종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부채 합계액이 50억엔 이상 또는 최종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의 사업수익의 총액의 합계액이 70억엔 이상인 의료법인
- ② 최종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부채 합계액이 20억엔 이상 또는 최종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의 사업수익의 총액의 합계액이 10억엔 이상인 사회의료법인
- ③ 사회의료법인채권 발행법인인 사회의료법인

- 단, 4개 병원단체협의회 의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권장하는 후생노동성 통지는 종전과 같이 취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법정감사를 받지 않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것도 인정됨
  -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채택할 수도 있으나, 강제적용이 아니므로 명확한 회계기준 없이 작성된 결

산서가 도도부현에 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일본의 의료법인 회계기준<sup>60)</sup>

### ① 총칙

- **(적용대상)** 「의료법」 제5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의료법인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이하 “대차대조표 등”)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회계원칙)** 의료법인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해야 함
  - 재정상태 및 손익상황에 대해 진실한 내용을 명료하게 표시할 것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함
  - 회계원칙과 절차 및 대차대조표 등의 표시방법은 매 회계연도 계속하여 적용하고 함부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됨
  -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대차대조표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회계원칙과 절차 및 표시방법의 적용 시, 본래의 정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음
- **(중요한 회계정책의 기재)** 대차대조표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을 기재하여야 함
  - 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충당금의 계상기준
  -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회계처리방법

---

60)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8M60000100095](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8M60000100095)

- 기타 대차대조표 등 작성을 위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
-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기재)**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유와 이러한 변경이 대차대조표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내용을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에 기재하여야 함
- **(총액 표시)**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함
- **(금액의 표시 단위)** 대차대조표 등에 관한 사항의 금액은 천원 단위로 표시함

## ②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의 표시)**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 말일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상황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양식 제1호에 따라 기재함
- **(대차대조표의 구분)**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함
  -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순자산은 출자금, 기금, 적립금 및 평가·환산차액 등으로 구분함
- **(자산의 평가 원칙)** 자산은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함
  - 다만,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증여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시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고정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한함)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고정자산의 시가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회복의 전망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고정자산의 사용가치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음
- **(유가증권의 평가)**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보유한 채권은 제외)은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금전채권의 평가)** 미수금 및 대여금, 기타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징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징수불능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공제하고, 취득가액에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출자금)** 출자금은 지분의 규정이 있는 의료법인에 직원, 기타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금액을 계상함
- **(기금)** 기금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7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금액을 계상함
- **(적립금)** 적립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의 손익을 적립한 순자산금액을 계상함
  - 적립금은 설립 등 적립금 대체기금 및 이월이익적립금, 기타 적립금의 성격을 나타내는 적절한 명칭을 붙인 과목으로 계상하여야 함
- **(평가·환산차액 등)** 평가·환산차액 등은 다음의 항목 구분에 따라 해당 항목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과목으로 계상하여야 함
  - 기타유가증권평가차액(순자산에 계상되는 기타유가증권의 평가차액을 말함)
  - 이연위험회피손익(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손익이 인식될 때까지 이연되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 또는 시가평가차액을 말함)

〈표 II-28〉 일본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양식

(단위: 천엔)

자산		부채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현금및예금		지급어음	
사업미수금		매입채무	
유가증권		단기차입금	
재고자산		미지급금	
전도금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미지급법인세등	
기타유동자산		미지급소비세등	
II. 고정자산		선수금	
1. 유형고정자산		예수금	
건물		선수수익	
건축물		○○총당금	
의료용 기계비품		기타유동부채	
기타 기계비품		II. 고정부채	
차량운반구		의료기관채	
토지		장기차입금	
건설중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기타유형고정자산		○○총당금	
2. 무형고정자산		기타고정부채	
영업권		부채합계	
소프트웨어		<b>순자산</b>	
기타무형고정자산		<b>과목</b>	<b>금액</b>
3. 기타자산		I. 기금	
유가증권		II. 적립금	
장기대여금		대체기금	
보유의료기관채		○○적립금	
기타장기대여금		이월이익금	
임직원등장기대여금		III. 평가·환산차익 등	
장기선급비용		기타유가증권평가차액	
이연법인세자산		이연위험회피손익	
기타고정자산		순자산합계	
자산합계		부채·순자산합계	

출처: 일본 「의료법」, 양식 제호

### ③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의 표시)**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양식 제2호에 따라 기재함
- **(손익계산서의 구분)** 손익계산서는 사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함
- **(사업손익)** 사업손익은 본래업무사업손익, 부대업무사업손익 및 수익사업사업손익으로 구분하며, 본래업무(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병원, 요양노인보건시설 또는 요양의료병원에 관련된 업무를 말함), 부대 업무 또는 수익사업의 사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 및 비용을 기재하여 얻은 각 사업손익의 금액을 계상함
- **(경상손익)** 경상손익은 사업손익의 사업활동 이외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계상함
-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손익으로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가감하여 세전당기순손익을 계상하고 여기에 법인세 등 조세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상함
- **(대차대조표 등에 관한 주석)** 대차대조표 등에는 그 작성의 전제가 되는 사항과 재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야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주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계속사업의 가정에 관한 사항
  - 자산과 부채 중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서의 전입금의 상황에 관한 사항
  - 담보제공자산에 관한 사항
  -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후속사건에 관한 사항

○ 기타 의료법인의 재정상태 또는 손익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

〈표 II-29〉 일본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양식

(단위: 천엔)

과목	금액	
I. 사업손익		
A 고유목적사업손익		
1. 사업수익		XXX
2. 사업비용		
(1) 사업비	XXX	
(2) 본부비	XXX	XXX
고유목적사업이익		XXX
B 부대사업손익		
1. 사업수익		XXX
2. 사업비용		XXX
부대사업사업이익		XXX
C 수익사업사업손익		
1. 사업수익		XXX
2. 사업비용		XXX
수익사업사업이익		XXX
사업이익		XXX
II.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XXX	
기타사업외수익	XXX	XXX
III. 사업외비용		
이자비용	XXX	
기타사업외비용	XXX	XXX
경상이익		XXX
IV.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이익	XXX	
기타특별이익	XXX	XXX
V. 특별손실		
고정자산매각손실	XXX	
기타특별손실	XXX	XXX
세전당기순이익		XXX
법인세·주민세 및 사업세	XXX	
법인세등조정액	XXX	XXX
당기순이익		XXX

출처: 일본 「의료법」, 양식 제호

## 라)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특징

### ① 대차대조표

- **(소비세의 회계처리)** 소비세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병원회계준칙은 세금 제외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었지만,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세금제외방식과 세금포함방식의 선택적용이 인정됨
  -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예산 중심의 발상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세금포함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비영리법인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임
- **(보조금 회계처리)** 시설정비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병원회계준칙은 부채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에 따라 의료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직접 감액방식 또는 적립금회계에 의해 압축 기장하게 되어 있음
- **(고정자산 손상의 회계처리)**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또는 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고정자산 손상회계를 적용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은 수익창출이 일차적 목적이 아니므로 손상회계를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나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손상징후 판정 절차가 없고, 병원 등의 부지에서 장래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이 창출될 것이라는 발상도 없음
  - 단, 해당 토지의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했을 경우에 회복전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순자산의 구분)** 의료법인의 순자산은 의료법인의 종류에 따라 계정과목 구성에 차이가 있음
  - 출자금은 사원 등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
  - 기금제도는 출자지분이 없는 의료법인에 있어 잉여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료법인의 기본성격을 유지하면서 기업 활동의 재

원이 되는 자금의 조달 수단으로서 재산적 기초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금제도를 채택한 경우를 말하며, 기금의 출연자는 의료법인에 비해 열등한 후순위채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함

〈표 II-30〉 일본의 의료법인의 종류별 순자산 계정과목

계정과목	재단	사단		
		지분 없음		지분 있음
		기금 있음	기금 없음	
출자금	×	×	×	○
기금(대체기금)	×	○	×	×
적립금	○	○	○	○
평가환산차액 등	○	○	○	○

출처: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jp/Documents/get-connected/pub/atc/201707/jp-atc-kaikeijyoho-201707-06.pdf>

- **(법인세 회계)** 의료법인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대상이며, 나아가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의료법인 등에서는 금액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의료법인 특유의 간편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리스거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의료법인에만 적용되는 「간편회계처리 규정」이 존재함
  - 3가지 항목 공통으로 전전 회계연도 말일의 부채총액이 200억엔 미만이면 간편회계처리를 사용할 수 있음
    - 이는 민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기업과는 종류가 다른 법인으로 투자정보를 중시한 민간 기업회계와는 차별성을 지녔다는 것을 수용한 것임

〈표 II-31〉 일본의 의료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간편회계처리

항목	의료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간편회계처리
퇴직급여 충당금 (운용지침 12)	회계기준 적용 시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 또는 직원의 평균 잔존근무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 처리할 수 있음</li> <li>• 전전 회계연도말 부채총액이 200억엔 미만인 의료법인의 경우 간편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음</li> </ul>
리스거래 (운용지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리스거래 원칙으로서 통상의 매매와 관련된 방법에 준하여 회계처리함</li> <li>• 아래의 경우에는 임대차거래(운용리스)로 회계처리 가능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리스거래개시일이 본 회계기준 적용 전의 회계연도인 소유권이전 외 금융리스거래</li> <li>② 리스거래 개시일이 전전 회계연도 말일의 부채총액이 200억엔 미만인 회계연도인 소유권이전 외 금융리스거래</li> <li>③ 한 계약의 리스료 총액이 300만엔 미만인 소유권 이전 외 금융리스거래</li> </ol> </li> </ul>
대손충당금 (운용지침 12)	전전 회계연도말 부채총액이 200억엔 미만인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이 추심불능예상액을 명백히 밀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금산입한도액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출처: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jp/Documents/get-connected/pub/atc/201707/jp-atc-kaikeijiyoho-201707-06.pdf>

## ② 손익계산서

- (사업손익의 구분) 사업손익은 본래업무, 부대업무 및 수익업무로 구분함
  - 사업손익을 구분하는 이유는 부대업무 및 수익업무의 운영이 고유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함임
  - 병원회계준칙에서 의료업외손익이었던 항목도 귀속이 명확한 부수손익이면 사업손익으로 구분함
    - 예를 들어 환자외급식수익이나 운영비보조금수익의 경우 병원회계준칙은 의료법외손익으로 구분하였으나,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사업손익에 포함함
- 「의료법」 및 후생노동성이 공개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업무범위’에 기초하여 업무구분 및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32〉 일본의 의료법인의 업무범위

업무구분	내용
본래업무 (의료법 제39조)	병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진료소 또는 요양노인보건시설 부수업무 예) 병원 등의 건물 내에서 행해지는 매점,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차장업, 통원환자의 해당 병원 등에 또는 해당 병원 등으로부터의 무상운송
부대업무 (의료법 제42조)	제1호: 의료인 양성 또는 재교육 제2호: 의학 또는 치학에 관한 연구소 설치 제3호: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진료소 외 진료소 개설 제4호: 질병예방운동시설(후생성 고시 제186조를 충족할 것) 제5호: 질병예방 온천이용시설 제6호: 보건위생에 관한 업무 제7호: 사회복지사업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제8호: 유료 양료원
수익업무 (의료법 제42조의 2)	사회의료법인이 본래 업무에 지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기부 행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익을 본래 업무의 경영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음

출처: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jp/Documents/get-connected/pub/atc/201707/jp-atc-kaikeijyoho-201707-06.pdf>

- (본부비용의 취급) 법인본부를 독립된 회계로 하고 있는 경우 본부비용은 본래업무사업손실, 부대업무사업손익 또는 수익업무사업손익으로 구분하지 않고, 본래업무사업손익으로 구분함
  - 법인본부를 독립된 회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음
- (사업외손익의 구분) 사업외손익은 일괄하여 표시함
  - 귀속이 명확한 부수손익은 각 사업손익에 계상되지만, 자금조달과 관련된 손익은 사업외손익으로 구분함

### ③ 의료법인의 감사

- 2016년 「의료법」 개정 시 의료법인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결산서류에 대하여 의료법인 회계기준이 강제적으로 적용됨과 동시에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외부감사 실시·공고 등이 의무화됨
  - 감사대상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중요한 회계방침 및 기타 주기 및 재산목록이며, 아래 표의 굵은 테두리 부분임

〈표 II-33〉 일본의 의료법인의 업무범위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사회의료법인	왼쪽 이외의 사회의료법인	왼쪽 이외의 의료법인
대차대조표	작성 및 공고의무	작성 및 공고의무	작성의무
손익계산서	작성 및 공고의무	작성 및 공고의무	작성의무
재산목록	작성의무	작성 의무	작성의무
부속명세표	임의	임의	임의
순자산변동계산서	임의	임의	임의
관계사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보고서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작성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작성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작성

출처: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jp/Documents/get-connected/pub/atc/201707/jp-atc-kaikeijiyoho-201707-06.pdf>

- 의료법인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함<sup>61)</sup>
  - 의료법인의 회계는 「의료법」과 이 법에 따른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름<sup>62)</sup>
  - 의료법인은 회계장부의 폐쇄 때부터 10년간 그 회계장부 및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저장해야 함
- 의료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달 이내에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계사업자(이사장의 배우자가 그 대표자인 기타 해당 의료법인 또는 그 임원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함)와의 거래상황에 관한 보고서,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서류(이하 “사업보고서 등”)를 작성하여야 함<sup>63)</sup>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61) 「의료법」 제50조의 2

62) 「의료법」 제50조

63) 「의료법」 제51조

- 의료법인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을 때부터 10년간 당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존하여야 함
- 의료법인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 의료법인은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단의료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 등을 사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함<sup>64)</sup>
  - 이사는 전항의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 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들에게 사업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함
  -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한함)은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 등(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한함)을 공고하여야 함<sup>65)</sup>
- 의료법인은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의 감사보고서, 정관 또는 기부행위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그 사원 또는 평의원 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sup>66)</sup>
  - 사회의료법인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의 감사보고서, 정관 또는 기부행위,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보고서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64) 「의료법」 제51조의 2

65) 「의료법」 제51조의 3

66) 「의료법」 제51조의 4

- 의료법인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 후 3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의 감사보고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보고서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sup>67)</sup>
- 도도부현 지사는 정관 또는 기부 행위 또는 신고한 서류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 다. 정책적 시사점

-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영리법인 회계기준과 별도로 의료기관에 특화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존재함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시행 중인바, 정부가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주요 이용자임
  - 공공의료보험제도하에서 정부는 의료정책 수립 및 적정 원가 보전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에 관한 회계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운용하고 있음
    -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인의 관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달라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별도의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회계기준과 별도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논할 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보험제도를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목적 적합할 수 있음
  - 민간의료보험국가보다 공공의료보험국가에서 적정 보험료의 결정과

---

67) 「의료법」 제52조

원가보전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 높을 것이므로 이들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특화된, 별도 회계기준 제정과 유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임

-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병상 수(100병상 이상)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본은 사업수익 및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면 개인 병·의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나, 일본의 경우 개인 병·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일본의 경우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편회계처리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무적용에 따른 협력의무 이행비용을 낮추어 주고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 리스거래, 대손충당금 등 복잡성이 높은 회계처리 항목에 대하여 소규모 의료법인 특례규정을 두어 간편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 법인과 개인 병·의원의 의료원가 구조가 상이할 경우 법인병원의 회계정보만을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수가보전금액을 결정하면 개인 병·의원의 불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병·의원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특례규정을 통해 개인 병·의원은 더 간편한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된 것이 비교적 최근(2017년)이고, 의료법인의 약 80% 이상이 1인 의사 의료법인으로 불리는 개인 개업의가 법인화한 형태여서 의료법인만을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에 포섭하더라도 개인 병·의원의 의료원가 자료 수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료기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과 외부감사대상이 일치하지 않지만, 일본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은 외부감사도 강제화됨
  - 일본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제출받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외부감사 의무화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따름
  - 만약 재무제표를 제출받는 기관이 외부감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의무화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 Ⅲ.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차이 분석 및 쟁점사항

---

#### 1.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개요

##### 가. 도입배경 및 제정과정

###### □ 도입 배경

-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공익법인이 설립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제도를 마련함
-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를 규정하였으나 회계감사와 공시의 기초가 되는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로 이를 보완시키기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함
- 공통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을 통해 공익법인 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익법인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 제정과정

- 201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를 신설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TF 구성함
- TF는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공개초안’을 기초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함
- 2017년 9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심의 진행

과 민간전문가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진행함

- 2017년 11월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 수렴함
- 2017년 12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최종 고시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나. 공익법인 회계기준 체계

- 총칙,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평가, 주석으로 구성됨
- 핵심 재무보고서는 운영성과표로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비용, 공통수익·비용 배분 등이 보고됨
- 운영성과표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전입·환입에 대한 보고사항임
- 또한 운영성과표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함

#### 다. 적용대상

-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포함되는 법인 중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 적용
-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과 개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의료법인·사립학교법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검토함

#### 라. 공시하는 결산서류

- 공익법인 중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함

-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마. 공익법인 재무보고

- 재무보고 일반 원리
  - 공익법인의 재무보고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재무상태, 운영성과, 주식)를 제공함
- 공익법인 특수성 반영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6조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며,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중요한 사항은 원칙이 정해져 있음
-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순자산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무상태표 등식(회계등식)에 따라 자산총액과 부채와 순자산의 총액의 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운영성과표
  -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 및 결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임
  -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록하며,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음
  -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고, 사업외수익은 가산, 사업외비용은 차감하여 당기운영이익을 산출함

- 사업수익은 사업의 결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뜻하며, 사업비용은 사업의 결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뜻함
- 사업외수익(사업외비용)은 사업수익(사업비용)이 아닌 수익(비용) 또는 차익(차손)임

□ 주식

-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를 위하여 추가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보,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상황을 기재
-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모든 기관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주식사항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표 III-1〉 공익법인 회계기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잉여금 처분 및 부채 인식 모두 허용
순자산의 구분	기본순자산, 순자산조정, 보통순자산으로 구분
기부금 등 수익인식 조건 및 분류	기부금의 수익인식시점을 실제 기부 받는 시점으로 인식
비용의 인식 및 분류	(성격별) 인력비용, 분배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기능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자산과 부채의 평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유형자산 재평가
주식에 관한 사항	필수적 주식 기재사항 15개

출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표 III-2〉 공익법인 회계기준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No.	내용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출처: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 □ 구분회계

- 정관상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분회계를 통해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업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수행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이라면 ‘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됨

## 2.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 회계처리

### 가. 사업수익

-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함
- 기타사업수익은 기타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특성에 맞게 표시해야 함
- 사업수익의 구분
  - 기부금수익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반대급부 없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
  -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기부약정만 한 경우 기부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기부금이 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의 사용과 처분에 제약이 존재하므로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함
  - 보조금수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기부금과 동일하게 실제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회비수익은 기부금의 성격이 아닌 회비인 경우를 의미함

### 나. 사업비용

-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여,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 공익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 표시하며, 이를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이나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기타사업비용은 기타사업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으며, 운영성과표 본문이나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사업비용 기능별 구분
  - 사업비용은 기능별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 표시함
  -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각각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때는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이나 주석에 기재할 수 있음
  - 일반관리비용은 공익법인의 제반 관리활동(인사, 재무, 감독, 기획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공익목적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의미함
  - 모금비용은 모금활동(모금홍보, 모금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모집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모금비용을 세분화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사업비용 성격별 구분
  - 사업비용은 성격별로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 표시함
  -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수행비용에서만 발생할 수 있음
  - 인력비용은 공익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시설비용은 공익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모두에서 시설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의미함

### 3. 공익법인의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 지원
  - 「민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과 ‘출연재산’에 따라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출연재산’이 되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 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수익사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 제외)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 양도소득
  -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또한, 비사업용 토지 등은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 지원
  - 「부가가치세법」상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담부 증여 시 과세

- 「소득세법」상 공익법인에게 출연자(개인)가 채무인수 조건부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채무상당액만큼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공익법인에 채무인수 조건부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4.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및 이행의무

□ 출연재산 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에는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

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임

□ 자료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음
- 「법인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총발급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법규칙 제75의3 서식)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공익목적사업 사용

-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 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칙」상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여기서,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뜻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성실공익법인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

□ 주식 취득 및 보유 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 특수관계 거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 2000.1.1.부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여기서, 자기내부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 전체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 5.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 가. 공통점

- 법인의 구성원이 주주가 아니므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할 수 없으며, 이익이 발생하면 시설관리, 사용인의 임금, 개선, 연구개발 등에만 사용되어야 함
  -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재산으로 귀속됨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사항이 유사함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
  -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병원과 공익법인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출연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세 과세대상인 법인병원과 공익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최초로 입법될 당시 존재하던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근거로 두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지만 다수의 공익법인은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기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 동일한 법인세 회계를 적용

## 나. 차이점

### 1) 설립방식의 차이

- 의료법인은 의료사업에 기초하여 영리적인 속성과 비영리적인 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립
-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의료인으로 제한됨
- 공익법인은 기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상속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주로 설립
- 공익법인의 설립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특별하게 공익법인 설립에 제한을 받지 않음

### 2) 영리속성의 차이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의료업 자체는 의료서비스 이용자(환자)에게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므로 영리법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의료법인은 사업에 영리적인 속성이 존재하므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기말의 재산 상태를 측정해야 하며, 기간별 성과계산을 실시하여야 함
-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이익'과 비교할 만한 단일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기에 자원의 유입과 유출의 성격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의 희생과 성취에 관한 정보가 중요

- 공익법인은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기보다는 법적인 규제와 기부자의 의사가 주요한 통제수단임

### 3) 세법의 적용 여부

-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의료법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기기는 하지만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의료부대수익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활동을 통한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됨

### 4) 관련 법령 내용의 차이

- 의료법인의 경우 개설주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는 반면, 공익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할지 여부에 따라 손금 산입의 계산방법이 달라짐
-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이지만,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임

-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인건비 제약 규정이 없는 반면, 일부 공익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이상 적립 가능한 장학재단 등)에게 인건비 8천만원 초과 지출(지출은 가능함)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보지 않음

#### 5) 회계기준의 차이<sup>68)</sup>

- 재무제표: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공시하도록 함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작성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음
- 구분회계: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계와 병원회계로 구분함
- 자본 표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기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표시
-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해 선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선급금계정을 이용함
- 국민건강보험환자 수익에 대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수납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하여 처리함
- 손익계산서 표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사업수익(비용), 사업외수익(비용)으로 구분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수익(비용), 의료외수익(비용)으로 구분함

---

68) 엄기중(2019) 수정

- 국고보조금: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sup>69)</sup>에서 기본순자산 관련 국고보조금은 기본순자산 계정, 기본순자산 관련 이외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수익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관 회계기준에서는 자산관련 국고보조금은 자산차감 계정, 수익 관련 국고보조금은 기부금수입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계정과목 사용

〈표 III-3〉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차이점

항목	공익법인 회계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구분회계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법인회계 병원회계
자본 표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해 선급한 금액	건설중인 자산	선급금
국민건강보험환자 수익인식		수납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기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하여 처리
손익계산서 표시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국고보조금	기본순자산 관련 국고보조금: 기본순자산 계정 기본순자산 관련 이외 국고보조금: 보조금수익 계정	자산관련 국고보조금: 자산차감 계정 수익관련 국고보조금: 기부금수입 계정
계정과목		의료장비, 의료사회사업비 및 의료분쟁비용 등 특수 계정과목 사용

출처: 엄기중(2019)

69) 공익법인 회계기준에는 구체적 규정 없음

## 6.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문제점

### 가. 비교 가능성 저하

#### □ 회계기준 적용 방식의 차이

-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3조(보고실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2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함. 공익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하나의 작성 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 표시함
-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이 가능하며, 의료법인의 경우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함
-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금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사업수익으로 인식하나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기부금수익을 의료외수익으로 인식함
- 공익법인의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을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함. 또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일관된 국세청 결산공시양식을 제정함
  - 그러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학기관 등은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두고 있음. 따라서 공익법인 전체에 대하여 상호 비교가 어려움

#### □ 구분회계의 복잡성 차이

- 공익법인은 업무의 단순성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구분회계도 용이하나, 의료법인은 업무의 복잡성으로 공익목적사업회계와 기타사업회계 구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의료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sup>70)</sup>,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일반, 기타의 원천별로 의료수익을 구분하고 있음<sup>71)</sup>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수익은 수익 원천별로 구분회계가 가능함. 그러나 비용의 경우 수익 원천별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이는 의료서비스가 공통 자산(예: 의료기기)을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 합리적인 원가동인으로 각 수익 원천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 원재료+의료 전문서비스’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의료 원재료 부분은 비교적 쉽게 계산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인적 전문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인적 전문서비스 부분은 계산이 어려움
- 구분회계 강제 시 원가회계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단순하게 배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비용 배분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임
- 박윤진(2020 p.10)에서 의료법인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비중이 19.4%에서 37.2%로 17.8%p 증가하였는데 비용도 20.1%에서 37.9%로 17.8%p 증가하였음. 기타사업도 이와 유사하게 수익 비중이 80.6%에서 62.8%로 17.8%p 감소하였는데 비용도 79.9%에서 62.1%로 17.8%p 감소하였음. 이는 수익비율로 비용을 배분했다는 간접적 증거라고 판단됨
- 원가회계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형병원의 경우 비용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의료기관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제조원가 명세서의 사례를 들어 의무사항으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sup>72)</sup>

70)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71) 별지 제6호서식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외래(입원)수익명세서

72)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6. 2. 6.)에서는 “제품제조 원가의 구성내역은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

□ 수입원천의 차이

- 의료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의 경우 전체수입금액에서 기부금은 6%, 보조금은 44%, 기타사업은 45% 정도를 차지했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대부분 기타사업에서 수입을 얻음

□ 의료기관이 공익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의료수입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익법인과 그 운영 성격이 상이함. 이러한 점은 의료기관의 수입구조에서 명확히 드러남. 재원조달 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두 조직형태의 공익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표 III-4〉 전체 사업 대비 수입금액 비율

(단위: %)

	전체 공익법인	의료기관 제외 공익법인	의료법인
기부금	7	6	2
보조금	44	44	5
기타사업	49	45	94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나. 의료법인 재무정보 공시 변환을 통한 유용성 검토

□ 의료기관 재무정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변환할 때 임의성 개입 문제점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기반한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각 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통일성 있는

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품제조 원가의 구성내역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공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후자의 논리를 받아들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품제조원가의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공시를 필수적인 공시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원가명세서에 대한 공시는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공시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의료·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은 구분회계를 요구하지 않으나,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회계 수행
- 의료분야 공익법인(총 1,019개)의 경우 261개 기관은 공익목적사업 수익 100%, 535개 기관은 기타사업수익 100%로 공시함<sup>73)</sup>

○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이 쉽지 않으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sup>74)</sup>

□ 공시변환을 통한 재무정보 이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

- 의료법인 재무정보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보건행정분야와 연계됨
  - 보건행정을 위하여 의료법인의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이익정보를 제공받음
  - 의료법인의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현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확인하여 보건행정분야에서 활용
- 의료법인 재무정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변환한 경우 공시변환된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시변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정보는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과 연계되어 활용된다고 볼 수 있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정보 중 기부와 관련된 사항은 기부자 및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사결정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 만약 의료법인의 재무정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변환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 사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의료법인의 재무정보 중 조세감면과 연계된 사항이 중요한 것인지, 또는 기부사결정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공시변환의 방법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73) 박윤진(2020) p.27

74) 박윤진(2020) p.22

- 공시변환을 통한 재무정보의 정보 유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사업비용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운영성과표를 제공하며, 이는 이익정보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
    -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이나 기부금의 비중이 높아서 현금변동성이 크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법인 재무정보를 공시변환하는 경우 정보 유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의료법인 재무정보를 공시변환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음
  - 관련 기관 거래 정보가 누락될 수 있음
    - 의료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거래 사항이 중요
    -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하는 정부기관과의 거래가 중요한 사항이 아님
    -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경우 의료법인의 주요한 거래 내역이 누락될 위험이 발생
  - 의료법인의 특수항목 정보가 누락될 수 있음
    -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장비, 의료분쟁 등의 특수한 사항이 존재
    - 공익법인에서는 출연재산의 운영이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 토지와 건물 등의 정형화된 유형자산으로 자산이 구성됨
    -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킬 때에는 의료법인의 특수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

---

## IV.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단계적 조화방안

---

### 1. 선행연구

- 본 연구주제와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엄기중(2019)임.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V-1>과 같음. 엄기중(2019)은 계정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엄기중(2019)를 확장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단계적 조화방안과 공시의 조화방안을 제안함
- 재무제표 조화방안: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 구분회계 조화방안: 병원회계를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 자본 표시 조화방안: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해 선급한 금액 조화방안: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 국민건강보험환자 수익인식 조화방안
  - 타 미수수익과 구분하여 별도의 충당금 계정을 설정
  - 보험자단체의 청구금액을 경험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
- 손익계산서 표시 조화방안
  - 의료항목은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 사업수익, 사업비용 등의 분류를 제외하고 세부적인 범주의 분류를 하위규정에 위임
  - 분배비용을 목적비용으로 변경하여 목적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표시

- 국고보조금 조화방안: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 계정과목 조화방안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특수한 계정과목은 지속적으로 유지
- 운영방안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
  -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의료기관 세부회계기준을 마련

〈표 IV-1〉 엄기중(2019)의 조화방안

항목	조화방안
재무제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구분회계	병원회계를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자본 표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해 선급한 금액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국민건강보험환자 수익인식	별도의 총당금 계정을 설정하여 경험률에 따라 대손총당금을 설정
손익계산서표시	- 의료항목은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 사업수익, 사업비용 등의 분류를 제외하고 세부적인 범주의 분류를 하위규정에 위임 - 분배비용을 목적비용으로 변경
국고보조금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킴
계정과목	의료기관 회계기준 유지
운영방안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 -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의료기관 세부 회계기준을 마련

출처: 엄기중(2019)

- 김기호·김현동(2011)은 주요 국립대병원의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통하여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및 부채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익과 부채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용 및 부채인식을 금지함

- 의료사고비용에 대한 처리기준 미비로 의료손익이 왜곡되고 병원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 사고비용’ 계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상 유가증권 분류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킴
- 외부감사가 강제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 감리제도를 확립해야 함
- 단일화된 공시채널을 마련하여 의료기관별 상세 재무정보를 동일한 형식으로 공시해야 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 내에 질의응답체계를 마련해야 함
- 내부감사부서가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감사 임명을 강제하고, 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마련 또는 강화해야 함

## 2.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조화 가능성 분석

### 가. 의료법인의 특수성 및 사업영역별 공익성 검토

#### □ 설립목적 차이를 고려한 접근

-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을 목적으로 함.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게 공여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차이가 회계기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석이 필요
-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성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성이 동질적이거나, 적어도 유사하지 않다면 양자 간의 회계기준을 조화하여 공익성을 비교·검토할 필요성은 매우 낮음

□ 영리 속성 차이를 고려한 접근

- 의료기관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이 수익성과 연계된 의료서비스업임
- 의료기관의 기부금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저소득계층의 환자 진료를 위한 기부금)나 접대금으로 보는 경우(약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가 기부한 기부금)가 생겨 수익이 발생하여 기부금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생김
-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은 수익성이 배제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의 영리성 차이를 회계기준을 조화시킬 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차이를 고려한 접근

-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의 변경이 더딤
-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시적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시성이 떨어짐
-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관리를 하는 전담기관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개정 주기를 일치시켜 회계기준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의료수익의 공익성 검토<sup>75)</sup>

75)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익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로 정의함
- 의료수익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유입된 자원이므로 의료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됨
- Jung et al.(2016)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범주를 일부 감염병 질환 치료, 응급의료와 같이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서비스, 의료접근성 수준이 낮은 제공 대상자(취약계층 및 저소득층)를 통한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총 1,019개 의료분야 공익법인 중 261개 기관(25.6%)은 공익목적사업 부문수익 100%, 535개 기관(52.5%)은 기타사업부문수익 100%로 공시함. 공익목적사업부문수익과 기타사업부문수익을 구분하여 공시한 의료분야 공익법인은 21.9%임.<sup>76)</sup> 구분회계를 한 의료분야 공익법인의 공시실태에 대한 실증을 하는 것도 현재 의료법인 공익법인 및 회계전문가의 공익부문에 대한 정의를 귀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임

□ 의료기관 의료부대수익의 공익성 검토

- 의료기관의 수익은 크게 의료수익, 의료외수익으로 구분됨
- 의료수익은 다시 입원수익, 외래수익 및 기타의료수익으로 구분됨
- 의료외수익은 의료부대수익, 이자수익 등으로 구분됨
- 의료외수익 중 의료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정은 의료부대수익임
- 의료부대수익은 ‘병원이 주된 의료사업 이외의 영안실·매점·슈퍼마켓 등의 부대사업을 직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수익은 임대료수익으로 ‘병원건물 또는 시설(영안실, 식당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음. 두 계정의 구분은 직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6) 박윤진(2020) p.27

영 또는 임대)의 구분이며 실제 활동은 동일함<sup>77)</sup>

- 영안실, 매점, 슈퍼마켓, 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이 없으면 의료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기준으로 공익성을 판단하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또한 영안실, 매점, 슈퍼마켓, 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한 대체재 존재 여부로 공익성을 판단하면 의료기관 이외에 충분한 대체재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의료부대활동은 공익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됨
- 한편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조명할 때 의료부대수익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도 있음. 영안실, 주차장 등이 의료서비스의 핵심기능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대활동임. 이러한 부대시설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한다면 의료서비스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공익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회계처리 검토

-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기타사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보고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음
- 단,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경리를 통한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표시는 그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의료법인은 구분 없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외수익의 상대적 비중이 미미하므로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는 필요함

77) [별표 2]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 해설

## 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재무제표 조화방안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면 오히려 의료 법인에 대한 주요 정보가 상실될 수 있음
- 구분회계 조화방안
  - 의료기관회계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 사업 구분 회계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 조화방안
  -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면, 의료법인의 유형자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음
- 의료비용 조화방안
  -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방식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반영시켜, 의료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으로 구분하고, 의료수행비용에 인력비용, 시설비용, 분배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

## 3.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단기적 조화방안

### 가. 회계기준 조화방안

-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단기적 조화방안은 현재와 같이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 인정
  - 현행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의료법인을 제외한 이유를 인정
  - 의료법인의 경우 설립 주체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음

- 의료법인에 존재하는 영리 속성을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더 잘 반영함
- 조달재원인 기부 등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국세청이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공익법인과 수입 원천의 상당한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험수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분석이 중요한 의료기관은 기관의 속성이 이질적이므로 공익성을 비교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통일시킬 유인은 높지 않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강제로 일치시키는 것은 목적적합성, 정보의 효용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됨. 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회계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점

- 현행 방식을 인정하므로 수용성이 높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 설립목적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설립 목적을 인정하므로 각 영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한계점

-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모두 공익성을 지닌 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이지만,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공익성을 비교하기 어려움
- 의료기관과 공익법인의 공익성에 대한 정의 및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나. 공시 조화방안

- 의료법인은 국세청 공시의무 대상으로 결산공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야 함
  - 2020년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됨

- 공시는 제3자가 공익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공익법인 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그러나 업종이 전혀 다른 학교, 의료기관, 모금단체가 서로 비교될 필요는 없고 동종 업종 내에서만 비교가능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2개의 회계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재무제표로 연계할 때 사용할 매뉴얼 작성 필요
-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재무제표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1) [손익계산서 1인 의료사업을 공익목적사업, 의료외사업을 기타사업으로 연계

-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손익계산서는 서비스업에 맞도록 조정되어 있으며 매출액 대신 의료수익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대신 의료비용을 사용함
- 의료사업과 의료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으로 배분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부대비용은 의료비용과 별도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분하고, 공통비용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함<sup>78)</sup>
    - 인건비: 인력 수, 총급여 및 투입시간 등의 기준으로 배분함
    - 재료비: 재료의 투입량, 직접재료비, 사용면적(병실 수), 사용인원 등의 기준으로 배분함

78)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 관리운영비: 매출액, 점유면적, 서비스시간, 사용인원, 관련 유형자산 가액 등의 기준으로 배분함
  - 상기 배부기준은 예시일 뿐이며 이보다 합리적인 배부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배부기준을 사용 가능함
-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서울대학교병원 감사보고서,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의료부대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계정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함
- 의료수익(비용)을 공익목적사업 수익(비용)으로 대응 및 의료외수익(비용)을 기타사업 수익(비용)으로 대응(안)
- 기부금수익이 의료외수익, 기부금이 의료외비용이므로 기타사업수익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의료법인의 기부금수익 비중(0%)이 극히 낮아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sup>79)</sup>
- 의료사업이 주요활동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환입)액, 법인세비용은 의료손익에서 가감함
-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매출액을 세분화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함.<sup>80)</sup> 수익항목뿐만 아니라 비용항목도 세분화가 필요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아니라 향후 사용할 금액을 비용으로 미리 계상하는 것임
- 대학부속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의료기기 등 구입, 교비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되며, 기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지정기부금과 의료기기 등 구입에 사용됨

79) 박윤진(2020) p.14

80) 박윤진(2020) p.17

- 홈택스 공시를 통해 정보이용자가 파악하고 싶은 정보는 공익목적사업에 실제 지출된 금액인데,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항목에 기록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성과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항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인 경영성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보험수가 산정에 필수적인 절차임.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된 이야기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당위성은 높지 않음
- 아울러 의료수익은 공익목적사업, 의료외수익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안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적절한 안분기준을 찾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에 동시에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비용처리가 해당 의료기기의 구입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용시간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불가능함
  - 결과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의료수익(공익목적사업)과 의료외수익(기타사업)으로 안분해야 한다면 준비금 설정 연도의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의 배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의 배분도 어려움이 있음

〈표 IV-2〉 공익법인 회계기준 운영성과표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계정 연계(1안)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I. 사업수익			I. 의료수익	#1
1. 기부금수익		#28	1. 입원수익	#2
2. 보조금수익			2. 외래수익	#3
3. 회비수익			3. 기타의료수익	#4
4. 투자자산수익			1) 건강진단수익	#5
가. 이자수익		#13	2) 수탁검사수익	#6
나. 배당수익		#14	3) 직원급식수익	#7
다. 기타		#16+#17+#23+#24 +#25+#27+#29	4) 제증명료수익	#8
5. 매출액	#2+#3	#12+#15	5) 구급차 운영수익	#9
6. 기타	#5+#6+#7+#8 +#9+#10	#19+#20+#21+#22 +#30+#31+#32	6) 기타수익	#10
II. 사업비용			II. 의료외수익	#11
1. 사업수행비용			1) 의료부대수익	#12
가. 분배비용		#76	2) 이자수익	#13
나. 인력비용			3) 배당금수익	#14
① 급여	#35		4) 임대료수익	#15
② 상여금	#36		5)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6
③ 퇴직급여	#37		6)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7
④ 복리후생비	#43		7) 연구수익	#18
⑤ 교육훈련비	#54		- 연구중심병원 연구수익	#19
⑥ 기타			- 수탁연구수익	#20
다. 시설비용			- 임상시험수익	#21
① 감가상각비	#63+#64+#65		- 기타연구수익	#22
② 지급임차료	#50		8) 외환차익	#23
③ 시설보험료	#48		9) 외화환산이익	#24
④ 시설유지관리비	#46+#47+#49 +#52+#58		10) 투자자산처분이익	#25
⑤ 기타	#45		11) 유형자산처분이익	#26
라. 기타비용			12) 대손충당금환입	#27
① 여비교통비	#44+#53		13) 기부금수익	#28
② 소모품비	#39+#40+#41 +#61+#68		14) 잡이익	#29

〈표 IV-2〉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③지급수수료	#51+#66+#69 +#70+#71		15)자산수증이익	#30
④용역비			16)채무면제이익	#31
⑤업무추진비	#55+#56+#57 +#59+#60+#62		17)보험차익	#32
⑥회의비			Ⅲ.의료비용	#33
⑦대손상각비	#67	#75	1.인건비	#34
2.일반관리비용			1)급여	#35
가.인력비용			2)제수당	#36
①급여			3)퇴직급여	#37
②상여금			2.재료비	#38
③퇴직급여			1)약품비	#39
④복리후생비			2)진료재료비	#40
⑤교육훈련비			3)급식재료비	#41
⑥기타			3.관리운영비	#42
나.시설비용			1)복리후생비	#43
①감가상각비			2)여비교통비	#44
②지급임차료			3)통신비	#45
③시설보험료			4)전기수도료	#46
④시설유지관리비			5)세금과공과	#47
⑤기타			6)보험료	#48
다.기타비용			7)환경관리비	#49
①여비교통비			8)지급임차료	#50
②소모품비			9)지급수수료	#51
③지급수수료			10)수선비	#52
④용역비			11)차량유지비	#53
⑤업무추진비			12)교육훈련비	#54
⑥회의비			13)도서인쇄비	#55
⑦대손상각비			14)접대비	#56
3.모금비용			15)행사비	#57
가.인력비용			16)연료비	#58
①급여			17)선교비	#59
②상여금			18)의료사회사업비	#60
③퇴직급여			19)소모품비	#61

〈표 IV-2〉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④복리후생비			20)자체연구비	#62
⑤교육훈련비			21)감가상각비	#63
⑥기타			22)무형자산상각비	#64
나.시설비용			23)임차자산개량상각비	#65
①감가상각비			24)광고선전비	#66
②지급임차료			25)대손상각비	#67
③시설보험료			26)피복침구비	#68
④시설유지관리비			27)외주용역비	#69
⑤기타			28)잡비	#70
다.기타비용			29)의료분쟁비용	#71
①여비교통비			Ⅳ. 의료외비용	#72
②소모품비			1.의료부대비용	#73
③지급수수료			2.이자비용	#74
④용역비			3.기타의 대손상각비	#75
⑤업무추진비			4.기부금	#76
⑥회의비			5.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77
⑦대손상각비			6.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78
4.기타사업비용			7.연구비용	#79
가.인력비용			1)연구중심병원 연구비용	#80
①급여			2)수탁연구비	#81
②상여금			3)임상시험비	#82
③퇴직급여			4)기타연구비	#83
④복리후생비			8.외환차손	#84
⑤교육훈련비			9.외화환산 손실	#85
⑥기타			10.투자자산처분손실	#86
나.시설비용			11.유형자산처분손실	#87
①감가상각비			12.재고자산감소손실	#88
②지급임차료			13.고유목적사업비	#89
③시설보험료			14.잡손실	#90
④시설유지관리비			15.재해손실	#91
⑤기타			Ⅴ.법인세비용	#92
다.기타비용		#80+#81+#82+#83	Ⅵ.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	#93
①여비교통비			Ⅶ.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	#94
②소모품비			Ⅷ. 당기운영이익(손실)	#95
③지급수수료				
④용역비				

〈표 IV-2〉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⑤업무추진비				
⑥회의비				
⑦대손상각비				
⑧상품매입				
Ⅲ. 사업이익(손실)				
Ⅳ. 사업외수익				
1.유형자산처분이익		#26		
2.유형자산손상처손환입				
3.무형자산처분이익				
4.무형자산손상처손환입				
5.전기오류수정이익				
6.기타				
Ⅴ.사업외비용				
1.유형자산처분손실		#87		
2.유형자산손상처손				
3.무형자산처분손실				
4.무형자산손상처손				
5.유형자산재평가손실				
6.기타의 대손상각비				
7.전기오류수정손실				
8.기타		#74+#77+#78+#84 +#85+#86+#88+#89+#90+#91		
Ⅵ.고유목적사업준비 금전입액	#93			
Ⅶ.고유목적사업준비 금환입액	#94			
Ⅷ.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Ⅸ.법인세비용	#92			
X.당기운영이익(손실)				

출처: 저자 작성

2) [손익계산서 2인] 기부금 항목을 공익목적사업,

나머지 항목을 기타사업으로 연계

- 공익법인 재무정보 공시는 공익법인의 주요 수익인 기부금수익 정보와 이와 관련된 비용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이러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공시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수익과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익목적사업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함
- 의료기관외 공익법인과 의료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은 증진될 것임. 그러나 기부금수익 비중이 극히 낮은 의료법인의 경우 기타사업 항목으로만 공시될 가능성이 큼

〈표 IV-3〉 공익법인 회계기준 운영성과표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계정 연계(2인)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I.사업수익			I.의료수익	#1
1.기부금수익	#28		1.입원수익	#2
2.보조금수익			2.외래수익	#3
3.회비수익			3.기타의료수익	#4
4.투자자산수익			1)건강진단수익	#5
가.이자수익		#13	2)수탁검사수익	#6
나.배당수익		#14	3)직원급식수익	#7
다.기타		#16+#17+#23+#24 +#25+#27+#29	4)제증명료수익	#8
5.매출액		#2+#3+#12+#15	5)구급차 운영수익	#9
6.기타		#5+#6+#7+#8+#9+#10 +#19+#20+#21+#22 +#30+#31+#32	6)기타수익	#10
II.사업비용			II.의료외수익	#11
1.사업수행비용			1)의료부대수익	#12
가.분배비용	#76		2)이자수익	#13
나.인력비용			3)배당금수익	#14
①급여		#35	4)임대료수익	#15

〈표 IV-3〉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②상여금		#36	5)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6
③퇴직급여		#37	6)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7
④복리후생비		#43	7)연구수익	#18
⑤교육훈련비		#54	- 연구중심병원 연구수익	#19
⑥기타			- 수탁연구수익	#20
다.시설비용			- 임상시험수익	#21
①감가상각비		#63+#64+#65	- 기타연구수익	#22
②지급임차료		#50	8)외환차익	#23
③시설보험료		#48	9)외화환산이익	#24
④시설유지관리비		#46+#47+#49+#52+#58	10)투자자산처분이익	#25
⑤기타		#45	11)유형자산처분이익	#26
라.기타비용			12)대손충당금환입	#27
①여비교통비		#44+#53	13)기부금수익	#28
②소모품비		#39+#40+#41+#61+#68	14)잡이익	#29
③지급수수료		#51+#66+#69+#70+#71	15)자산수증이익	#30
④용역비			16)채무면제이익	#31
⑤업무추진비		#55+#56+#57+#59 +#60+#62	17)보험차익	#32
⑥회의비			Ⅲ. 의료비용	#33
⑦대손상각비		#67+#75	1. 인건비	#34
2. 일반관리비용			1)급여	#35
가. 인력비용			2)제수당	#36
①급여			3)퇴직급여	#37
②상여금			2. 재료비	#38
③퇴직급여			1)약품비	#39
④복리후생비			2)진료재료비	#40
⑤교육훈련비			3)급식재료비	#41
⑥기타			3. 관리운영비	#42
나. 시설비용			1)복리후생비	#43
①감가상각비			2)여비교통비	#44
②지급임차료			3)통신비	#45
③시설보험료			4)전기수도료	#46
④시설유지관리비			5)세금과공과	#47
⑤기타			6)보험료	#48

〈표 IV-3〉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다.기타비용			7)환경관리비	#49
①여비교통비			8)지급임차료	#50
②소모품비			9)지급수수료	#51
③지급수수료			10)수선비	#52
④용역비			11)차량유지비	#53
⑤업무추진비			12)교육훈련비	#54
⑥회의비			13)도서인쇄비	#55
⑦대손상각비			14)접대비	#56
3.모금비용			15)행사비	#57
가.인력비용			16)연료비	#58
①급여			17)선교비	#59
②상여금			18)의료사회사업비	#60
③퇴직급여			19)소모품비	#61
④복리후생비			20)자체연구비	#62
⑤교육훈련비			21)감가상각비	#63
⑥기타			22)무형자산상각비	#64
나.시설비용			23)임차자산개량상각비	#65
①감가상각비			24)광고선전비	#66
②지급임차료			25)대손상각비	#67
③시설보험료			26)피복침구비	#68
④시설유지관리비			27)외주용역비	#69
⑤기타			28)잡비	#70
다.기타비용			29)의료분쟁비용	#71
①여비교통비			IV. 의료외비용	#72
②소모품비			1. 의료부대비용	#73
③지급수수료			2. 이자비용	#74
④용역비			3. 기타의 대손상각비	#75
⑤업무추진비			4. 기부금	#76
⑥회의비			5. 단기 매매증권처분손실	#77
⑦대손상각비			6. 단기 매매증권평가손실	#78
4. 기타사업비용			7. 연구비용	#79
가.인력비용			1)연구중심병원 연구비용	#80
①급여			2)수탁연구비	#81

〈표 IV-3〉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②상여금			3)임상시험비	#82
③퇴직급여			4)기타연구비	#83
④복리후생비			8.외환차손	#84
⑤교육훈련비			9.외화환산 손실	#85
⑥기타			10.투자자산처분손실	#86
나.시설비용			11.유형자산처분손실	#87
①감가상각비			12.재고자산감모손실	#88
②지급임차료			13.고유목적사업비	#89
③시설보험료			14.잡손실	#90
④시설유지관리비			15.재해손실	#91
⑤기타			V. 법인세비용	#92
다.기타비용		#80+#81+#82+#83	VI.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	#93
①여비교통비			VII.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94
②소모품비			VIII.당기운영이익(손실)	#95
③지급수수료				
④용역비				
⑤업무추진비				
⑥회의비				
⑦대손상각비				
⑧상품매입				
III. 사업이익(손실)				
IV. 사업외수익				
1.유형자산처분이익		#26		
2.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3.무형자산처분이익				
4.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5.전기오류수정이익				
6.기타				
V. 사업외비용				
1.유형자산처분손실		#87		
2.유형자산손상차손				
3.무형자산처분손실				
4.무형자산손상차손				

〈표 IV-3〉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과목(의료기관)	#
5.유형자산재평가손실				
6.기타의 대손상각비				
7.전기오류수정손실				
8.기타		#74+#77+#78+#84+#85+#86+#88+#89+#90+#91		
VI.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93		
VII.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94		
VIII.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IX.법인세비용		#92		
X.당기운영이익(손실)				

출처: 저자 작성

### 3) [재무상태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배분

- 재무상태표 항목을 의료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과 의료외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함
- 영안실, 매점, 주차장, 식당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자산 금액의 구분은 용이할 수 있으나 연구수익과 관련된 자산 등과 같이 의료사업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구분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부채도 개별 자산이나 사업에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구분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일괄적으로 부채를 조달하여 내부적으로 이를 할당하는 경우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 기본금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배부기준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배분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인건비: 인력 수, 총급여 및 투입시간 등의 기준으로 배분함
  - 재료비: 재료의 투입량, 직접재료비, 사용면적(병실 수), 사용인원 등의 기준으로 배분함
  - 관리운영비: 매출액, 점유면적, 서비스시간, 사용인원, 관련 유형자산 가액 등의 기준으로 배분함
  - 상기 배부기준은 예시일 뿐이며 이보다 합리적인 배부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배부기준을 사용 가능함

〈표 IV-4〉 공익법인 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계정 연계(안)

과목(공익법인)	통합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	과목(의료기관)	#
자산				자산	
I.유동자산				I.유동자산	#1
1.현금및현금성자산	#2	배부	배부	1.현금및현금성자산	#2
2.단기투자자산	#3+#4	배부	배부	2.단기금융상품	#3
3.매출채권	#5	배부	배부	3.당기매매증권	#4
(-) 대손충당금	#6	배부	배부	4.의료미수금	#5
4.선급비용	#12	배부	배부	(-) 대손충당금	#6
5.미수수익	#10	배부	배부	5.단기대여금	#7
6.미수금	#8	배부	배부	6.미수금	#8
(-) 대손충당금	#9	배부	배부	(-) 대손충당금	#9
7.선급금	#11	배부	배부	7.미수수익	#10
8.재고자산	#19+#20+#21	배부	배부	8.선급금	#11
9.기타	#7+#13+#14 +#15+#16+#17 +#22+#23	배부	배부	9.선급비용	#12
II.비유동자산				11.선급제세	#13
1.투자자산				12.본지점	#14

〈표 IV-4〉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통합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	과목(의료기관)	#
가.장기성예적금	#26	배부	배부	13.이연법인세자산	#15
나.장기투자증권	#27	배부	배부	14.기타의 당좌자산	#16
다.장기대여금	#28-#29	배부	배부	15.국고보조금	#17
라.기타	#32	배부	배부	16.재고자산	#18
2.유형자산				가.약품	#19
가.토지	#34	배부	배부	나.진료재료	#20
나.건물	#35	배부	배부	다.급식재료	#21
(-)감가상각누계액	#36	배부	배부	라.저장품	#22
다.구축물	#37	배부	배부	17.기타유동자산	#23
(-) 감가상각누계액	#38	배부	배부	Ⅱ.비유동자산	#24
라.기계장치	#39	배부	배부	1.투자자산	#25
(-) 감가상각누계액	#40	배부	배부	가.장기금융상품	#26
마.차량운반구	#43	배부	배부	나.투자유가증권	#27
(-) 감가상각누계액	#44	배부	배부	다.장기대여금	#28
바.건설중인자산	#48	배부	배부	(-) 대손충당금	#29
사.기타	#45-#46+#47 +#49	배부	배부	라.퇴직보험 예치금	#30
①미술·서화·골동 품등				마.보증금	#31
②의료장비	#41-#42	배부	배부	바.기타투자자산	#32
3.무형자산				2.유형자산	#33
가.지식재산권	#52	배부	배부	가.토지	#34
나.개발비				나.건물	#35
다.컴퓨터소프트웨어				(-)감가상각누계액	#36
라.광업권				다.구축물	#37
마.임차권리금	#51	배부	배부	(-) 감가상각누계액	#38
바.기타				라.기계장치	#39
4.기타비유동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40
가.임차보증금	#31	배부	배부	마.의료장비	#41
나.장기선급비용				(-) 감가상각누계액	#42
다.장기미수금				바.차량운반구	#43
라.기타	#30+#54	배부	배부	(-) 감가상각누계액	#44

〈표 IV-4〉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통합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	과목(의료기관)	#
자산총계				사.공기구비품	#45
부채				(-) 감가상각누계액	#46
Ⅰ.유동부채				아.기타유형자산	#47
1.단기차입금	#59	배부	배부	자.건설중인자산	#48
2.매입채무	#58	배부	배부	차.국고보조금	#49
3.미지급비용	#63	배부	배부	3.무형자산	#50
4.미지급금	#60	배부	배부	가.영업권	#51
5.선수금	#61	배부	배부	나.산업재산권	#52
6.선수수익	#66	배부	배부	4.기타비유동자산	#53
7.예수금	#62	배부	배부	가.이연법인세자산	#54
8.유동성장기부채	#65	배부	배부	자산총계	#55
9.기타	#67+#68+#69 +#70+#71	배부	배부	부채	#56
Ⅱ.비유동부채				Ⅰ.유동부채	#57
1.장기차입금	#73+#74+#75	배부	배부	1.매입채무	#58
2.임대보증금	#79	배부	배부	2.단기차입금	#59
3.퇴직급여충당부채	#77	배부	배부	3.미지급금	#60
(-)퇴직연금운용자산				4.선수금	#61
4.기타	#76+#78+#80 +#82	배부	배부	5.예수금	#62
Ⅲ.고유목적사업준비금	#81	배부	배부	6.미지급비용	#63
부채총계				7.미지급제세	#64
순자산				8.유동성장기부채	#65
Ⅰ.기본순자산	#86+#87	배부	배부	9.선수수익	#66
Ⅱ.보통순자산				10.예수보증금	#67
1.적립금	#95	배부	배부	11.단기부채성충당금	#68
2.잉여금	#96	배부	배부	12.임직원단기차입금	#69
Ⅲ.순자산조정				13.이연법인세부채	#70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14.기타의 유동부채	#71
2.유형자산재평가이익	#89	배부	배부	Ⅱ.비유동부채	#72
3.기타	#90+#92+#93	배부	배부	1.장기차입금	#73
순자산 총계				2.외화장기차입금	#74

〈표 IV-4〉의 계속

과목(공익법인)	통합	공익 목적 사업	기타 사업	과목(의료기관)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금융리스미지금	#75
				4.장기성매입채무	#76
				5.퇴직급여충당금	#77
				6.이연법인세부채	#78
				7.임대보증금	#79
				8.기타	#80
				Ⅲ.고유목적사업준비금	#81
				Ⅳ.의료발전준비금	#82
				부채총계	#83
				순자산	#84
				Ⅰ.기본금	#85
				1.법인기본금	#86
				2.기타기본금	#87
				Ⅱ.자본잉여금	#88
				1.자산재평가적립금	#89
				2.기타자본잉여금	#90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91
				1.재평가잉여금	#92
				2.해외사업환산손익	#93
				Ⅳ.이익잉여금(결손금)	#94
				1.차기이월 잉여금(결손금)	#95
				2.당기순이익(순손실)	#96
				순자산 총계	#97
				부채 및 순자산 총계	#98

출처: 저자 작성

#### 4.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방안

-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방안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기본 회계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임
-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모든 공익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사항으로 규정
  - 현행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의 방식은 기관의 특성과 주무관청을 고려하여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장기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모든 공익법인의 기본 회계기준으로 설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을 하위 회계기준으로 규정
  - 이런 접근은 하위 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통하여 공익법인 간 회계처리 차이를 감소시킴
  -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항을 의료법인 회계기준에 규정함
  - 명칭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 한다면, 의료법인 회계기준지침(안)으로 변경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상위 개념이고, 의료법인 회계기준지침이 하위 개념임을 명시함
  - 또 다른 대안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유사하게 기준서 체제를 새로 정립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고려해볼 수 있음. 기존의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사이에 공통된 내용으로 기준서를 제정한 다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서를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장점
  -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모든 공익법인의 모범에 해당하여 공익법인에

필요한 회계기준의 공통적인 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상위 회계기준으로 설정하여 모든 공익법인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음
- 의료법인의 특수성은 하위 회계지침을 통하여 반영함

□ 한계점

- 공익법인 회계기준 개정기관과 의료법인 회계기준 개정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회계기준 정립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적시적인 개정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중립적 기관이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개정에 중재 역할을 하도록 참여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 V. 결론

---

### 1. 현황

####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 2020.3.4. 「의료법」 개정으로 2021. 3.5.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 대상이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됨
  -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립근거법령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적용 회계기준에 차이가 있음
  - 준정부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중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하며, 그 외 의료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 적용됨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 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가 적용되나, 이것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중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하며, 그 외 의료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의료기관 회계기준 미적용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1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법적 근거 미비로 적용 회계기준이 상이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 미적용기관은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나. 공익법인 회계기준

□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공익법인이 설립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제도를 마련함

○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를 규정하였으나 회계감사와 공시의 기초가 되는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로 이를 보완시키기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함

○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포함되는 법인 중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 적용

- 결산서류 공시의무 없는 종교법인과 개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의료법인·사립학교법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2. 문제점

###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자체의 문제점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의료기관 전반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에 제약이 있음
  - 2018년 말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922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종합병원급 0.5%, 병원급 5.0%)에 불과함
    - 전체 의료기관의 95% 이상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료기관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
  -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대상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중에서도 '법인병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욱 제한적임
    - 2018년 말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922개이며 이 중 개인병원이 2,307개를 차지하는바, 법인병원의 개수는 1,615개(=3,922개 - 2,307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27%에 불과함
    - 1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인병원의 재무정보는 외부에 공시되고 있지 않음
  - 아울러 공시항목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가지 항목에 불과하

여 정보제공의 실효성이 낮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가지 항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의료기관이 제출·공시하는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제출·공시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정이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외부회계감사임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의 장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한 사후감리 부재의 또한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결산서에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규모에 따라 의료기관의 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이 왜곡되어 표시됨으로써 의료기관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정확한 병원경영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세무상 손금산입한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 또는 50%)는 존재하나, 결산서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는 개별 의료기관이 재량적으로 선택

할 수 있음

- 개별 의료기관이 결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규모에 의해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변동함으로써 정확한 병원경영성과의 파악이 어려움
-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나. 공익법인 회계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 1) 비교가능성 저하

#### □ 회계기준 적용 방식의 차이

-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3조(보고실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2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함. 공익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하나의 작성 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 표시함
-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이 가능하며, 의료법인의 경우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함
-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금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사업수익으로 인식하나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기부금수익을 의료외수익으로 인식함
- 공익법인의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을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함. 또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일관된 국세청 결산공시양식을 제정함
  - 그러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학기관 등은 별도의 회계처리기

준을 두고 있음. 따라서 공익법인 전체에 대하여 상호 비교가 어려움

□ 구분회계의 복잡성 차이

- 공익법인은 업무의 단순성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구분회제도 용이하나, 의료법인은 업무의 복잡성으로 공익목적사업회계와 기타사업회계 구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의료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일반, 기타의 원천별로 의료수익을 구분하고 있음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수익은 수익 원천별로 구분회계가 가능함. 그러나 비용의 경우 수익 원천별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이는 의료서비스가 공통 자산(예: 의료기기)을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 합리적인 원가동인으로 각 수익 원천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 원재료+의료 전문서비스'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의료 원재료 부분은 비교적 쉽게 계산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인적 전문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인적 전문서비스 부분은 계산이 어려움
- 구분회계 강제 시 원가회계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단순하게 배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비용 배분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임
- 박윤진(2020 p.10)에서 의료법인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비중이 19.4%에서 37.2%로 17.8%p 증가하였는데 비용도 20.1%에서 37.9%로 17.8%p 증가하였음. 기타사업도 이와 유사하게 수익 비중이 80.6%에서 62.8%로 17.8%p 감소하였는데 비용도 79.9%에서 62.1%로 17.8%p 감소하였음. 이는 수익비율로 비용을 배분했다는 간접적 증거라고 판단됨

- 원가회계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형병원의 경우 비용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의료기관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제조원가명세서의 사례를 들어 의무사항으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입원천의 차이

- 의료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의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서 기부금은 6%, 보조금은 44%, 기타사업은 45% 정도를 차지했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대부분 기타사업에서 수입을 얻음

- 의료기관이 공익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의료기관은 의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의료수입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익법인과 그 운영 성격이 상이함. 이러한 점은 의료기관의 수입구조에서 명확히 드러남. 재원조달 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두 조직형태의 공익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2) 의료법인 재무정보 공시변환의 문제

- 의료기관 재무정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변환할 때 임의성 개입 문제점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기반한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각 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의료·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은 구분회계를 요구하지 않으나,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회계 수행

- 의료분야 공익법인(총 1,019개)의 경우 261개 기관은 공익목적사업 수익 100%, 535개 기관은 기타사업수익 100%로 공시함

-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이 쉽지 않으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

- 공시변환을 통한 재무정보 이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
  - 의료법인 재무정보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보건행정분야와 연계됨
    - 보건행정을 위하여 의료법인의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이익정보를 제공받음
    - 의료법인의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현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확인하여 보건행정분야에서 활용
  - 의료법인 재무정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변환한 경우 공시변환된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시변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정보는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과 연계되어 활용된다고 볼 수 있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정보 중 기부와 관련된 사항은 기부자 및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의사결정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 만약 의료법인의 재무정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변환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 사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의료법인의 재무정보 중 조세감면과 연계된 사항이 중요한 것인지, 또는 기부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공시변환의 방법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공시변환을 통한 재무정보의 정보유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사업비용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운영성과표를 제공하며, 이는 이익정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
    -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이나 기부금의 비중이 높아서 현금변동성이 크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법인 재무정보를 공시변환하는 경우 정보 유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의료법인 재무정보를 공시변환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음
- 관련 기관 거래 정보가 누락될 수 있음
  - 의료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거래 사항이 중요
  -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하는 정 부기관과의 거래가 중요한 사항이 아님
  -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경우 의료 법인의 주요한 거래 내역이 누락될 위험이 발생
- 의료법인의 특수항목 정보가 누락될 수 있음
  -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장비, 의료분쟁 등의 특수한 사항이 존재
  - 공익법인에서는 출연재산의 운영이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 토지와 건물 등의 정형화된 유형자산으로 자산이 구성됨
  -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킬 때에는 의료 법인의 특수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

### 3. 종합 및 제언

#### 가.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단기적 조화방안

- 첫 번째로, 회계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임. 현행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의료법인의 제외한 이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 료기관 회계기준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현행 방식을 인정하므로 수용성이 높으며 공익법인 회계기준 설립목 적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설립목적을 인정하므로 각 영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두 기관의 공익성을 비교하기 어렵 다는 현실적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함

- 두 번째로는, 공시를 조화시키는 것임. 2020년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시의무대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재무제표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 손익계산서의 경우 의료사업을 공익목적사업, 의료외사업을 기타사업으로 연계하거나 또는 기부금 항목을 공익목적사업, 나머지 항목을 기타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재무상태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의료기관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재무제표로 연계할 때 사용할 매뉴얼 작성 필요

####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방안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모든 공익법인의 기본 회계기준으로 설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을 하위 회계기준으로 규정
  - 의료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항을 의료법인 회계기준에 규정함
  - 또 다른 대안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유사하게 기준서 체제를 새로 정립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고려해볼 수 있음. 기존의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사이에 공통된 내용으로 기준서를 제정한다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서를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상위 회계기준으로 설정하여 모든 공익법인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의 특수성은 하위 회계지침을 통하여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적시적인 개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중립적 기관이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개정에 중재 역할을 하도록 참여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 참고문헌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기관 원가계산의 이해』, 2020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경영분석』, 2016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2019
-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9
-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2019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http://hometax.go.kr).
-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 12
-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 (법률 제15514호).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 2018
-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
- 기획재정부, 「공인법인 회계기준」 2018. 1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http://alio.go.kr).
- 김기호·김현동,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의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2(3). 2011, pp.9-51.
- 김원희·남혜정·전규안·정창모·송옥렬,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회계저널』, 22(3). 2013, pp.159-197.
- 노태일, 「비영리조직(NPO)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경영학회지』, 29(11). 2016, pp.1663-1691.
- 박두진, 『병원회계와 세무실무』, 코페하우스, 2018
- 박윤진,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향후 개선방안」,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0, pp.61-76.

- 백상미, 「의료기관 경영분석을 통한 회계 공시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의료경영학연구』, 12(1). 2018, pp.15-26.
- 보건복지부, 「의료법」(법률 제17472호), 2020. 9. 12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9. 1. 1.
-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06호), 2016. 11. 1.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작성요령」, 2003.
- 성백춘,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20(1). 2012, pp.31~47.
- 신현걸,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방안의 모색」. 『회계정보연구』. 36(2). 2018, pp.213-244.
- 엄기중,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조화에 관한 연구」. 『2019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9, pp.27~49.
- 오성근, 「병원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2(1). 2003, pp.99~117.
- 이고은·최기호,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시 실태를 바탕으로」. 『회계저널』, 27(2). 2018, pp.231~262.
- 전중열, 「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3(1). 2005, pp.1~28.
- 최만규·황인경·손민성, 『병원회계학제10판』. 보문각, 202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시행과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200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년 제1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201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년 제2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201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20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공익법인 회계기준』, 2020
- 황성완·강정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의료기관회계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의료경영학연구』, 5(1). 2011, pp.15~2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 <http://haspa.khid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스템, <http://has.khidi.or.kr>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Jung Y, Lee GC, Yoo MS., “Publicness in Private Health Care Organizations:  
Developing a Model for Analysis and Measuring a Current Stat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36(4):344-373.

##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조화방안

---

정형록  
정광화  
노희천  
기은선  
김미옥  
허성준

본 연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100 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현황 파악에 제약이 있으며,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회계기준 적용방식, 구분회계의 복잡성, 수입원천 차이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재무정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변환하면 임의성이 개입될 가능성, 재무정보 이용자 범위의 불명확성, 의료기관의 특수성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조화방안을 장·단기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단기적 관점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의료법인을 제외한 논

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장점과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장기적 관점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모든 공익법인의 기본 회계기준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법인 회계기준을 하위 회계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단기 조화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개정기관과 의료법인 회계기준의 개정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중립적 기관의 참여를 통해 의료법인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적시적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 Harmon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Public Service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

Hyung-Rok Jung  
Kwang-Hwa Jeong  
Hee-Chun Rho  
Eun-Sun Ki  
Mi-Ok Kim  
Sung-Joon Huh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how to identify major issues and harmonize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rough the status and analysis of accounting standards of medical institution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ummarizing this is as follows.

Although the subjec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medical institutions is gradually expanding, it is still limited to hospital level with more than 100 beds, so it is limited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status of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a problem was raised that the comparability was low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the source of income.

However, if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a medical institution is converted according to the accounting standards of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problems such as the possibility of intervening randomness, the uncertainty of the scope of financial information users, and the omiss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medical institution may arise.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of harmonizing accounting standards for medical institution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from a long- and short-term perspective.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we acknowledge the logic of excluding medical corpora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erefore, while independently operating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medical institutions, a method of linking the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medical institutions to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as proposed, and the merits and limitations of these were describ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was proposed to set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s the basic accounting standards for all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to set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medical corporations as the lower accounting standards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short-term and long-term harmonization measures,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 that revise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the institution that revise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medical corporations is essential. Therefore, it is proposed to operate it so that the conformity review and timely revision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medical corporation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can be mad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neutral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Institute.

## ■ 저자약력

### 정형록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 노희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미옥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배화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 정광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기은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허성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강사

##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조화방안

---

발행	행	2021년 6월
저자	자	정형록 · 정광화 · 노희천 · 기은선 · 김미옥 · 허성준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쇄	(주)프리비

---

